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김아름·최윤경·심현기·박유경

연구보고 2023-01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저 자

김아름, 최윤경, 심현기, 박유경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심 현 기 (국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박 유 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01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48-0 9337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정부는 올해 1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유보통합은 교육체계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부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시·도(광역자치단체)-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방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업무 분석에 초점을 두고, 행정조직 관점에서 업무 이관 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14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16
II. 연구의 배경	19
1.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현황	21
2. 선행연구 검토	27
3.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33
4. 유관 법률 검토	36
III. 유아교육·보육 행정조직 및 업무 현황	43
1. 중앙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45
2. 지방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50
IV.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방단위 업무 및 인력 분석	57
1.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통-필수 이관 업무 설정의 근거 및 필요성	59
2.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영역 비교 통한 통합(안) 모색	72
3. 지자체 사례조사	82
V.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97
1.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99
2.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제외하는 경우	100
3.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106

참고문헌	111
------	-----

Abstract	115
----------	-----

부록	117
----	-----

1. 17개 지자체(시·도청) 보육 업무 8개 영역별 정리	117
2. 17개 시·도별 영유아 및 유아교육·보육 업무 조직 현황	142
3.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관련 세부 업무 영역 정리	144



표 목차

〈표 Ⅰ-3-1〉 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 면담	15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6
〈표 Ⅱ-3-1〉 지방자치-교육자치 비교	33
〈표 Ⅱ-4-1〉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각부 장관 및 지자체 권한 비교 ..	36
〈표 Ⅱ-4-2〉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법률	38
〈표 Ⅲ-1-1〉 유아교육·보육 담당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조직 비교	45
〈표 Ⅲ-1-2〉 직제규정상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업무 비교	46
〈표 Ⅲ-1-3〉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육업무	48
〈표 Ⅲ-1-4〉 가정양육 지원 기능으로만 판단되는 보육업무	49
〈표 Ⅲ-1-5〉 영유아교육원 및 한국보육진흥원 비교	49
〈표 Ⅲ-1-6〉 학교안전공제회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비교	50
〈표 Ⅲ-2-1〉 시·도청 보육 담당 및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인력/부서 현황 ..	50
〈표 Ⅲ-2-2〉 시·도청 보육담당 인력 및 부서 현황	51
〈표 Ⅲ-2-3〉 조례상 17개 시·도 공통업무(보육)	51
〈표 Ⅲ-2-4〉 조례상 17개 시·도 고유업무(보육)	52
〈표 Ⅲ-2-5〉 시·군·구청 보육 담당 및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인력/부서 현황 ..	52
〈표 Ⅲ-2-4〉 시·군·구청 보육담당 인력 및 부서 현황	53
〈표 Ⅲ-2-5〉 조례상 서울 25개 자치구 공통업무(보육)	54
〈표 Ⅲ-2-6〉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비교	54
〈표 Ⅳ-1-1〉 유아교육·보육 공통 어젠다	62
〈표 Ⅳ-1-2〉 유아교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63
〈표 Ⅳ-1-3〉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63
〈표 Ⅳ-1-4〉 보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64
〈표 Ⅳ-1-5〉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안(2023-2027)	65
〈표 Ⅳ-1-6〉 미래지향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안)	67
〈표 Ⅳ-1-7〉 통합업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영역	70
〈표 Ⅳ-2-1〉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업무분석	73
〈표 Ⅳ-2-2〉 지자체 업무 탐색 초점	73
〈표 Ⅳ-2-3〉 유아교육보육 업무 영역 개요	73

〈표 IV-2-4〉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76
〈표 IV-2-5〉 시간제보육 관리기관(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78
〈표 IV-2-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	80
〈표 IV-3-1〉 서울시 보육업무 분석: 영역별 업무 수 및 비중	83
〈표 IV-3-2〉 전라남도 보육업무 분석: 영역별 업무 수 및 비중	85
〈표 IV-3-3〉 시·도청 보육업무 담당 직제	87
〈표 IV-3-4〉 이관대상 영유아 보육업무 판단 기준	88
〈표 IV-3-5〉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부문)	89
〈표 IV-3-6〉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사업 및 운영 지원 부문)	89
〈표 IV-3-7〉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교육 및 사업 예결산 부문)	90
〈표 IV-3-8〉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지역특화사업 부문)	91
〈표 IV-3-9〉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거버넌스 및 시스템 부문)	91
〈표 IV-3-10〉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지원조직 부문)	92
〈표 IV-3-11〉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안전 및 지도점검 부문)	92
〈표 IV-3-12〉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부문)	93
〈표 IV-3-13〉 영유아보육법상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사무	94
〈표 IV-3-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기관위임사무	95
〈표 V-1-1〉 관리체계 추진 로드맵	99
〈표 V-2-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예시	102
〈표 V-2-2〉 지방단위 업무 이관 방안(가정양육 지원 제외)	104
〈표 V-3-1〉 지방단위 업무 이관 방안(가정양육 지원 포함)	108



그림 목차

[그림 II-1-1] 현 관리체계 모습	26
[그림 II-2-1] 중앙행정체계 개편 교육부 통합안	28
[그림 II-2-2] 지방행정체계 개편 교육청 위주 시·도청과의 업무연계 통합안 ..	29
[그림 II-2-3] 초·중등분야 교육부 존치 필요 대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방안 ..	31
[그림 II-2-4] 초·중등분야 사무의 지방 이양 단계	32
[그림 IV-2-1] 3~5세 누리과정 일원화	75
[그림 IV-2-2] 누리과정 연수 체계	76
[그림 IV-2-3] 열린어린이집 관리 체계	79
[그림 IV-2-4]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한국보육진흥원, 2023)	81
[그림 V-2-1] 1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제외)	100
[그림 V-2-2] 2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제외)	103
[그림 V-3-1] 1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포함)	106
[그림 V-3-2] 2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포함)	108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유치원·어린이집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 관리체계로부터의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과 함께 이러한 기관 간 격차가 지속될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격차가 누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며, 지방단위에서는 어린이집은 시·도(광역자치단체)-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업무 분석이 필요함.

나. 연구 내용

- 교육부·복지부 유아교육·보육 행정 조직 및 업무 분석
 - 중앙부처 단위의 유아교육·보육 행정조직 및 업무 중 법령에서 지방에 위임한 업무를 파악함.
 - 유아교육·보육 업무 중 자치사무(고유사무) 및 위임사무를 분석하고, 업무 이관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 도출함.
- 유아교육·보육 지방 단위 행정 조직 및 업무 분석
 - 17개 시·도 유치원·어린이집 수, 원아 수, 출산율 등 업무량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함.
 - 17개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담당 업무 분석함.

□ 지방 단위 조직 및 업무 분석을 통한 이관 업무 설정

- 교육청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한 장·단기 이관 업무를 설정함.
-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무 파악 및 관련 쟁점 도출함.
- ECEC 필수요소, 관계 법률 및 지자체 조례, 업무분장표 등을 반영하여 필수 이관 업무를 분석함.

□ 관리체계 통합 방안 마련

- 관리체계 통합에 필요한 주요 추진 과제별 구체적 실행 전략 및 방안 마련함.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사항 도출함.

다.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선행 연구 분석
- 유아교육·보육 업무 관련 관계 법령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업무 관련 조례 분석
- 17개 시·도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유아교육·보육 지방단위 행정체계 진단

-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조직 비교 분석 및 진단
-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업무 비교 분석 및 진단

□ 지자체 사례조사

-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례조사 실시
- 17개 시·도 중 대도시 1곳,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 중 1곳 등 총 두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업무 현황 파악
- 각 행정기관 별 유아교육·보육 업무 담당자 면담을 통한 업무 이관 가능 여부와 관련 요구 파악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조직·업무 분석 방법 및 연구 방향 등 논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라.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본 연구에서는 통합모델 마련 이전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의 법적 성격(사회복지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배경

가.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현황

□ 중앙단위(보건복지부, 교육부)

-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업무는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에서 관련 업무 수행
-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 및 단체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업무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 계획 수립의 업무,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교육부는 유아교육정책과 등에서 유치원과 관련하여 조직정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구축,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치원 입학관리, 유치원 설립 및 폐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치원 교원 정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아학비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지방단위(시·도와 시·군·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등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 수행
- 구체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컨설팅에 관한 사항,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

-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업무, 유보 협력사업 관련 업무, 만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운영,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관리 및 안전 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

□ 기타 지원 조직

- 그 밖에 유아교육·보육 지원 조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있음.

나. 선행연구 검토

- 최윤경 외(2016)는 교육부가 유보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기능이 현재와 같이 학교정책실에서 독립해있는 기능 구조를 유지하되, 보건복지부의 보육 서비스 기능(예: 보육 3과)이 전환될 것임을 고려하여 독립국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음.
- 문무경 외(2022)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보육 사무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아교육 사무 간에 연계와 협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돌봄서비스 관련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먼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함.
- 최은영 외(2022)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사이에 돌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데, 이 중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해 교육청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보육 기능이 시·도로부터 교육청으로 이전 및 통합되는 것은 다른 기능이 기관을 넘어 이전되는 것과는 달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전까지 시·도 지사의 통제를 받던 기능이 교육감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함.

- 올해 6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 유보통합의 경우 업무가 교육자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음.

라. 유관 법률 검토

- 보육업무는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아교육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교육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법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외에 유관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교육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등이 있음.

3. 유아교육·보육 행정조직 및 업무 현황

가. 중앙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11명) 및 7개 부서
 - 유아교육정책과에서 유치원 관련 주요 기능 담당
- 복지부
 - 1국 3과 29명
 -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점검·안전·위생, 보육교직원 자격·양성·처우개선,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어린이집 관련 기능
 - 부모급여, 부모교육(양육) 지원, 양육지원체계 개편 등 가정양육 관련 기능
 -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등 수립, 보육통합시스템 관리, 보육실태조사, 법인·단체 관리 등 어린이집·가정양육 공통 기능

나. 지방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 시·도 및 시·군·구
- ☐ 지원조직

4.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방단위 업무 및 인력 분석

가. 분석 방향 및 전략

- ☐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영역 비교 통한 통합(안) 모색
 - 교육부, 교육청(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구조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체계를 유지하여, 업무 통합(안) 도출하고자 함.
 - 교육청(지원청)과 시·도(시·군·구)의 조직도 상 유아교육과 보육업무를 비교·분석함.

나.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영역 비교 통한 통합(안) 모색

- ☐ 유아교육 업무 영역 도출
- ☐ 서울시교육청 조직도 및 조례
- ☐ 지자체 보육업무 영역 도출
- ☐ 17개 지자체 보육업무 영역 개요
- ☐ 사업 주체별 역할

다. 지자체 사례조사

- ☐ 업무 분석
- ☐ 담당인력 분석

라. 시·도와 시·군·구 업무 분석

- ☐ 보육업무의 시·도 사무와 시·군·구 사무 분석

- 보육업무를 교육청-교육지원청 간 업무 배분 시 참고 가능

5.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가.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 보육업무는 계속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필요
- 통합모델이 마련되기 전까지 어린이집 성격은 “사회복지시설” 그대로 유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필요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 마련: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폐지 후 통합법률 마련. 그 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유관 법률 정비 필요

나.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 제외하는 경우

- 1단계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지원 기능 제외하고 교육부로 업무 및 인력 이관
 -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육아종합지원본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중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흡수함.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업무 중 어린이집 지원 관련 업무 및 인력 흡수
 -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로 이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교육부로 이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로 이관하거나 복지부 존치 검토
 - 광역의 경우 시·도청에서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되, 시·도교육청과 계속적으로 업무협의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시·도와 함께 수행하되, 점차 기능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업무 이관 협의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해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시·군·구에서

위탁 받아 수행

□ 2단계 추진 방향

-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을 계속해서 관리
- 한국보육진흥원과 영유아교육연수원은 일부 기능을 통합
- 광역단위는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계속해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시·군·구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 위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은 일부 기능 통합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청에서 계속해서 설치·운영

다.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 포함하는 경우

□ 1단계 추진 방향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업무 중 보육 업무 및 관련 인력 흡수
- 한국보육진흥원 교육부로 이관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교육부로 이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로 이관
- 광역단위: 시·도청에서 계속적으로 보육 업무 담당하되, 시·도교육청과 계속적으로 업무 협의
- 기초단위: 시·군·구에서의 업무 및 조직 관련 이관 협의를 지역별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정하여 각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협의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는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업무 이관 협의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계속해서 보육사업 수행

□ 2단계 추진 방향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교육연수원의 일부 기능 통합
-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은 일부 기능 통합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계속해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업 위탁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0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올해 1월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 30). 유치원·어린이집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구체적으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므로 이러한 기관 간 격차가 지속될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 30).

유보통합은 교육체계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 30).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추진을 포함시켰으며, 교육부 내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수립하고, 2023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교육부·보건복지부, 2023. 1. 30).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며, 지방단위에서는 어린이집은 시·도(광역자치단체)-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는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지방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조직 및 업무 분석이 필요하다.

2. 연구 내용

가. 교육부·복지부 유아교육·보육 행정 조직 및 업무 분석

중앙부처 단위의 유아교육·보육 행정조직 및 업무 중 법령에서 지방에 위임한 업무를 파악한다. 그리고 유아교육·보육 업무 중 자치사무(고유사무) 및 위임사무를 분석하며, 업무 이관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 도출한다.

나. 유아교육·보육 지방 단위 행정 조직 및 업무 분석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에서의 유아교육·보육 담당 행정 조직 및 담당 업무를 분석한다. 또한, 지자체별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직·기능 이관에 따른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 시·도/시·군·구(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한다.

다. 지방 단위 조직 및 업무 분석을 통한 이관 업무 설정

교육청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한 장·단기 이관 업무를 설정한다. 현행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무 파악 및 관련 쟁점을 도출하며, ECEC 필수요소, 관계 법률 및 지자체 조례, 업무분장표 등을 반영하여 필수 이관 업무를 분석한다.

라.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관리체계 일원화에 필요한 주요 과제와 실행전략 등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로드맵을 제안한다. 또한,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단계별 법령 정비사항을 검토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는 않으나, 기존 유보

통합 논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그리고 유아교육·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분석하며, 17개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유아교육·보육 업무에 관한 조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체계 일원화시 필요한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유아교육·보육 지방단위 행정체계 진단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에서의 유아교육·보육 행정 조직과 업무 등을 비교·분석하고 각 조직의 구조, 기능, 인력, 주요 업무 절차, 지원조직 등의 체계를 진단한다.

다. 지자체 사례조사

17개 시·도 중 두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유아교육·보육 조직 및 업무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각 기관별 유아교육·보육 업무 담당자 면담을 통해 업무 이관 가능 여부와 관련 요구 등을 파악한다.

〈표 1-3-1〉 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 면담

차수	일자	참석자	주요 내용
1차	4. 25.	광역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	- 시·도교육청으로의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이관에 대한 의견
2차	5. 9.	광역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	- 시·도교육청으로의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이관에 대한 의견
3차	5. 25.	기초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	- 시·도교육청으로의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이관에 대한 의견
4차	6. 7.	기초지자체 보육업무 담당자	- 시·도교육청으로의 보육업무 이관에 대한 의견 - 지원조직(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이관에 대한 의견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행정조직 및 업무 분석 방법, 관리체계 일원화에 관한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 진행상황과 정책 방향 등을 협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구분	차수	일자	참석자	주요 내용
전문가 자문회의	1차	4. 3.	학계전문가 2인	- 지방자치단체 업무 분석 방법 논의
	2차	4. 28	현장전문가 1인	- 지원조직 업무 이관 방안 자문
	3차	5. 3.	학계전문가 2인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논의 - 어린이집 소관 업무 교육부 이관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4차	5. 8.	학계전문가 2인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5차	5. 9.	학계전문가 1인 (서면검토)	- 지자체 예산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6차	5. 26.	학계전문가 2인 (서면검토)	-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필요 개정 법률과 관련 법률안 검토
	7차	6. 1.	학계전문가 1인	- 지원조직 업무 이관 방안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1차	4. 14.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 아이행복자문단	- 연구 방향 및 주요 쟁점 논의
	2차	4. 27.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 연구 진행 상황 공유 및 주요 쟁점 논의
	3차	5. 1.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 아이행복자문단	-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검토
	4차	5. 9.	- 교육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추진단	-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검토

4.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2023년 상반기에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부터 발표하여 추진한다는 점과 뉴질랜드의 경우 교육부, 사회복지부, 마오리담당부 3개 부처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한 이후에 교육과정, 교사자격, 비용지원 통합 추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교사, 기관 성격 등의 쟁점은 제외하고 관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및 업무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통합기관모델 마련 이전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유치원(학교)과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 법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부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예산과 재정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본 연구는 조직과 업무

측면에서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정부의 중앙단위에서의 업무이관 범위(예컨대, 가정양육 지원 기능 이관 여부 등) 역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정양육 지원 기능 이관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각각의 이관 방안을 제안한다.

II

연구의 배경

- 01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현황
- 02 선행연구 검토
- 03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 04 유관 법률 검토

II. 연구의 배경

1.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현황

현 유아교육 및 보육의 관리체계 현황은 [그림 II-1-1]과 같다. 현재 영유아 교육기관과 관련한 행정 관리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며, 0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이 절에서는 중앙단위, 지방단위, 그리고 기타 지원 조직 순으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앙단위

1) 보건복지부¹⁾

보건복지부의 부서를 살펴보면, 장관 아래 제1차관 내 인구정책실에는 보육정책관이 있다. 보육정책관은 다시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그리고 보육기반과로 분류되어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육정책과는 어린이집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 및 단체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업무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 계획 수립의 업무,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보육사업기획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업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업무, 국

1) 이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내용, https://www.mohw.go.kr/react/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2023. 4. 25. 인출) 참조.

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업무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와 보육지원 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

보육기반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과 관련된 업무,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업무,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그리고 시간간장형, 종일형, 방과 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2) 교육부²⁾

교육부의 부서를 살펴보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래 차관 내 교육복지돌봄지원관에는 유아교육정책과가 있다. 유아교육정책과에서는 유치원과 관련하여 조직 정원, 유아 나이스 시스템 구축,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유치원 입학관리, 유치원 설립 및 폐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치원 교원 정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유아학비 지원, 그리고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지방단위

1) 시·도와 시·군·구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육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컨설팅에 관한 사항, 부모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서울특별시청은 여성가족정책실 내 영유아

2) 이하의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담당업무,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604&page=0604&s=moe\(2023. 4. 25. 인출\)](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604&page=0604&s=moe(2023. 4. 25. 인출) 참조) 참조.

담당관이 있고, 영유아정책팀, 영유아지원팀, 영유아기반팀, 보육사업팀, 특화보육팀, 보육관리팀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³⁾

2)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아교육과 등에서 유치원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⁴⁾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유아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업무, 유보 협력사업 관련 업무, 만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장학 기본계획 수립 운영,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그리고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관리 및 안전 교육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⁵⁾

다. 기타 지원 조직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관련된 기타 지원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비영리 법인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곳이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다.

1) 유아교육 업무 지원 조직

가)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⁶⁾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은 교사연수와 연구, 유아체험을 3대 기능으로 하며, 질 높은 유아교육 현장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영유아교육연수원은 교육

3)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조직도 및 담당업무, <https://org.seoul.go.kr/org/orgChartView.do>(2023. 4. 25. 인출) 참조.

4) 서울, 경기의 경우 유아교육과를 별도로 두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유아특수교육과나 유치등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문무경 외(2022).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p.46 참조.

5)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도 및 업무내용 참조.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담당업무안내, https://buseo.sen.go.kr/buseo/bu11/user/mngrdept/BD_selectMngrDeptList.do(2023. 8. 22. 인출).

6) 이상의 내용은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s://iece.knue.ac.kr/#>(2023. 4. 25. 인출) 참조.

의 주체인 유아, 학부모, 교원을 위해 유아에게는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학부모에게는 교육 정보 및 상담 제공, 교원에게는 유아교육 연구 및 현장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교육원은 연수기획부, 교육지원부, 연구개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연구관과 연구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조직이다.

나) 유아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다. 이 기관은 유아 발달수준 및 유치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한 실내외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운영으로 공교육 기반 조성, 학부모 교육, 유아교육 정보 제공 및 사교육비 절감, 유아 교원,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통한 유아교육 진흥 및 교육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⁷⁾

다) 기타 조직

일반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 외에도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을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유아교육 업무를 여러 직속기관이 분담하여 담당하기도 한다(문무경 외, 2022: 48).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예방, 안전공제사업을 수행하며, 중앙회 외에 각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별도로 두어 실질적인 학교안전사고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⁸⁾

2) 보육 업무 지원 조직

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7)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은 15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세종의 경우 교육원 내 유아교육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경북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별로 유아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문무경 외(2022).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p.48 참조.

8)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중앙회 소개, 설립배경 및 목적, <https://www.ssif.or.kr/aboutus/establishment>(2023. 4. 25. 인출) 참조.

이다. 2022년 6월 이후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영유아보육법 제7조). 한국보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평가, 보육교직원 자격증 교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시간제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품질 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업무 등이 있다.⁹⁾ 특히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로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그리고 센터운영 지원 사업이 있다.¹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및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일시보육서비스의 기능,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¹¹⁾ 센터별로 개별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사업 수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주요 업무로는 보육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보육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사안 조정,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사업, 보육시설 안전사고 관련 통계 산출,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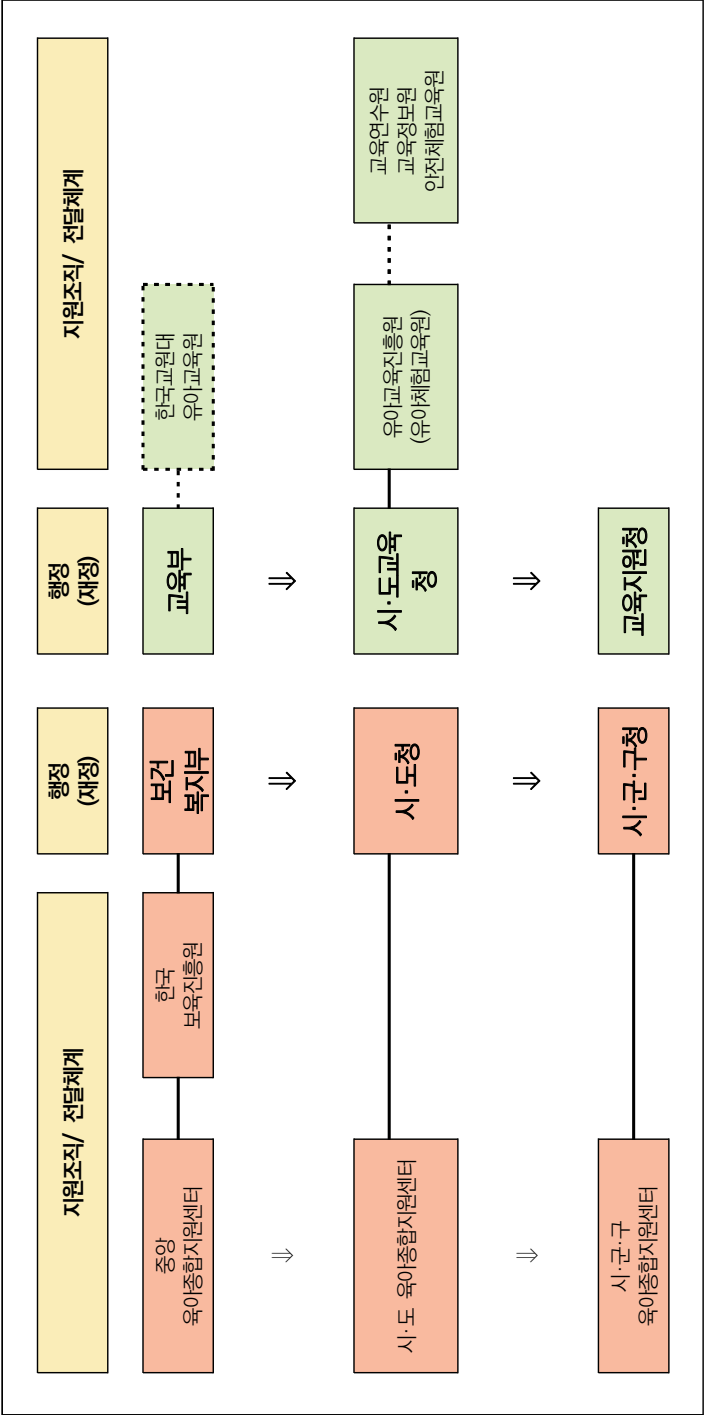
9)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www.kcpi.or.kr/kcpi/business/opcentssuppcntchild.do>(2023. 4. 25. 인출) 참조.

10)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www.kcpi.or.kr/kcpi/business/opcentssuppcntchild.do>(2023. 4. 25. 인출) 참조.

1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주요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4.jsp(2023. 4. 25. 인출) 참조.

12) 이상의 내용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sia.or.kr/>(2023. 4. 25. 인출) 참조.

[그림 II-1-1] 현 관리체계 모습



주: 유아교육보육 주요 조직 및 전달체계를 도식화하여 연구진이 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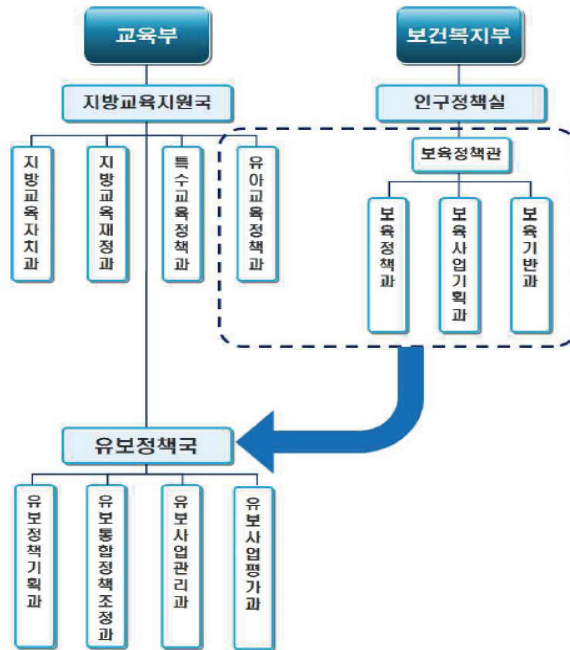
2.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교육부로의 일원화 시 관리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다.

최윤경 외(2016)는 교육부가 유보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 기능이 현재와 같이 학교정책실에서 독립해있는 기능 구조를 유지하되, 보건복지부의 보육 서비스 기능(예: 보육 3과)이 전환될 것임을 고려하여 독립국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때, 신설되는 독립국의 명칭은 유보정책국(영유아교육보육정책국)으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유보정책국 내에는 ①유보정책기획과, ②유보통합정책조정과, ③유보사업관리과, ④유보사업평가과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최윤경 외, 2016: 159).

유보정책기획과는 유보정책국의 주무과로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통괄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기획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다. 유보통합정책조정과는 유보통합 후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능 조정 등의 문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통합 방안 등을 완결 짓는 일이 유보통합정책조정과의 임무이다. 특히, 유보통합정책과에서는 유보의 일괄 통합이 어려운 업무,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 소유주체 및 관리 등 시·도 관할 업무가 지자체 교육청으로 이관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업무 등의 해법을 찾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직은 유보통합이 완성된 후에는 발전적으로 해체 내지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유보사업관리과는 유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유보통합 이후의 행정, 규제, 교육 보육 과정, 인력, 재정, 전달체계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유보사업평가과는 유보사업에 관련된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평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절차, 평가 틀 및 평가 매뉴얼과 컨설팅 모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최윤경 외, 2016: 159-160).

[그림 II-2-1] 중앙행정체계 개편 교육부 통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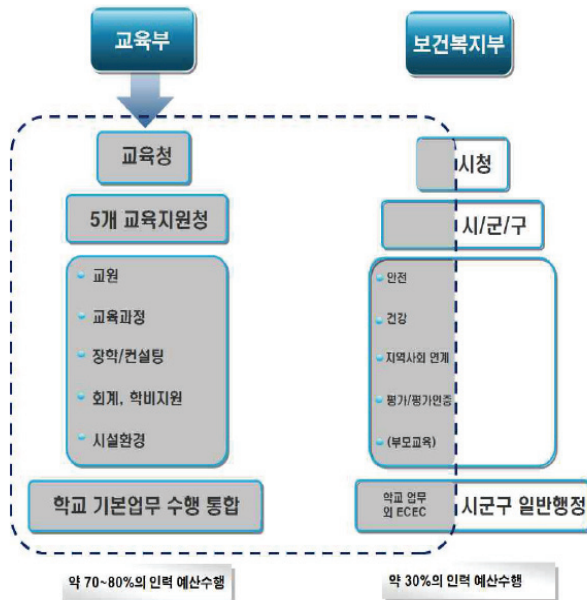
주: 최윤경·박창현·하연섭·김희수(2016).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0.

최윤경 외(2016)가 제시한 지방행정체계 개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 유보 지원과 통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및 보육 지원 기능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원화하되, 기능을 유보지원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즉,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과 내 유아교육팀과 17개 시·도청 산하 226개 시·군·구청 내에 있는 여성·보육과, 출산·보육, 가족·보육과/팀을 교육지원청의 유보지원과로 통합하는 안이다. 한편, 생애초기 ECEC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확장하여 시·도교육청 내에 유보정책국을 신설하는 안도 고려 가능하다. 유보기획과, 유보지원과, 유보관리과로 편성하여, 기획, 예산, 조례, 평가, 비용지원, 인허가, 지도점검, 교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내에는 유보지원과와 유보감독과를 신설하여, 인허가, 교육과정, 비용지원, 지도점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확장안도 가능하다고 보았다(최윤경 외, 2016: 162-163).

그 밖에도 당장에 실현하기 용이한 현실안이자 과도기적인 이행 방안으로,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완충형의 열린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즉 교육부의 고유한 학교체계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예: 교육과정, 장학/컨설팅, 교원 등)와 인력으로 교육부 산하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동시에 현재 지방정부-지자체에서 여성·가족·출산 업무 등과 함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구성을 고려하여, 현재 시·도청-시·군·구청의 보육담당 인력의 대략 약 30%가 시·도청-시·군·구청에서 통합된 ECEC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는 계속해서 지자체가 통합 기관에 대한 시설운영 관리와 지원을 맡도록 하는 등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일괄 이관이 어려운 보육관련 업무를 지속 수행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때 시·도청은 최소한의 관리운영 업무위주로 담당하고, 이 외의 주요 결정 권한은 교육부가 갖는다. 일정기간 이원화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준비과정이 없이 바로 전체 이관 통합을 하는 것 보다 현실적일 수 있으며, 점진적 통합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최윤경 외, 2016: 164-165).

[그림 II-2-2] 지방행정체계 개편 교육청 위주 시·도청과의 업무연계 통합안



주: 최윤경·박창현·하연섭·김희수(2016).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5.

마지막으로, 최윤경 외(2016)가 제시한 전달체계(지원체계) 통합안은 다음과 같다. 유보통합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는 영역이 유아교육진흥원과 한국보육진흥원의 2개 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통합 문제인데, 이 기관들은 (가칭)한국유보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유사한 사례로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 산하에 있던 한국학술진흥재단과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한 바가 있는데, 이 두 기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출현에 따라 한 기관으로 통합된 것이다.¹³⁾ 이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교육 기능과 과학 기능이 다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여전히 한국연구재단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실행하는 초기 단계에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격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최윤경 외, 2016: 167).

문무경 외(2022)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는 보육 사무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아교육 사무 간에 연계와 협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돌봄서비스 관련 연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먼저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육에 적합한 학교공간이 돌봄에 적합한 돌봄교실로 전환함에 있어서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기를 선호하나, 초등 교사들은 지자체 돌봄교실, 아동복지센터를 활용하거나 혹은 학교시설만 대여해주고 관리의 책임은 지역 복지를 책임지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기를 원한다. 이에 유아기부터 초등저학년까지 돌봄 서비스를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제공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문무경 외, 2022: 172). 나아가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간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사무에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보통합에 관한 사무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시에 진행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차적으로는 교육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유아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한시적 특별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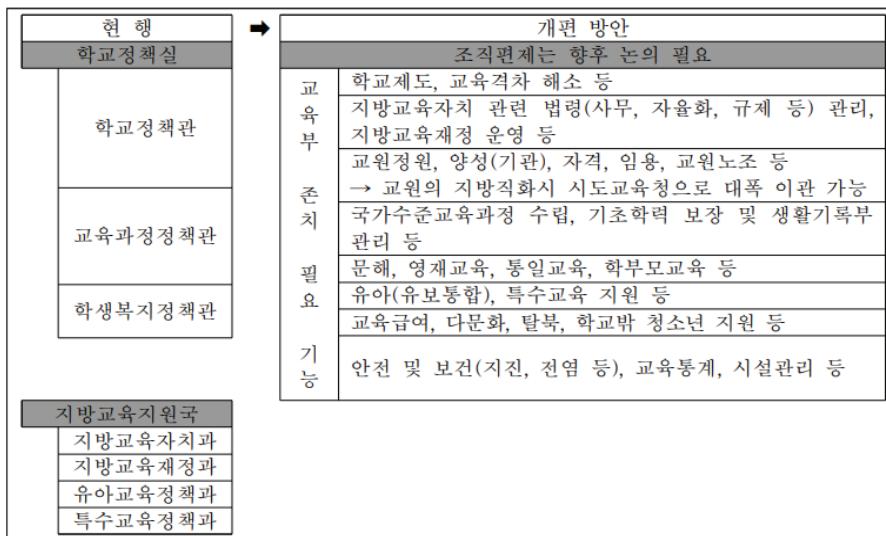
13)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재단소개, 기관현황, [https://www.nrf.re.kr/cms/page/main?menu_no=98\(2023. 5. 1. 인출\)](https://www.nrf.re.kr/cms/page/main?menu_no=98(2023. 5. 1. 인출)) 참조.

직(task force)을 구성하고 교육장이 주도적으로 관내 유치원 관련 사무를 총괄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유보통합 사무가 본격화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과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사무에 관한 한시적 특별조직이 협의하여 일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문무경 외, 2022: 173).

최은영 외(2022)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사이에 돌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부처 수준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자체 수준에서의 통합은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전문직과 시·도청과 시·군·구청의 행정직의 통합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유보통합을 통해 격차를 완화하고 질적인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현재 유치원의 교육재정교부금과 어린이집의 복지 예산이 합쳐진 규모보다 훨씬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최은영 외, 2022: 135).

김민희 외(2018)는 유보통합을 초·중등사무 지방(시·도교육청) 이양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교육부의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대기능 중심의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그림 II-2-3] 참조).

[그림 II-2-3] 초·중등분야 교육부 존치 필요 대기능 중심의 조직개편 방안



주: 김민희·주효진·주동범·오세희(2018). 유보통합 및 초·중등사무 지방이양과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2(1). p.134-136.

교육부가 유보통합 관리부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이관(이양)받거나 협치가 필요한 정책기능 및 업무 부문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관의 3개 부처(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의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통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 기능, 유아교육 기능, 보육 기능, 그리고 저출산 대응 기능을 포괄하여 갖추 수 있는 조직신설도 추진할 수 있다. 현행의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업무와 유아교육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및 양육지원 업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관련 업무, 그리고 현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저출생 대응 업무를 모두 포괄하여 담당하는 범부처 차원의 조직신설도 제안하였다.

[그림 II-2-4] 초·중등분야 사무의 지방 이양 단계

1단계 (국가/지방사무의 구분)	2단계 (교육청의 자율역량 병행 및 대폭 이양 추진)	3단계 (중장기 및 중앙정부 차원의 필요 불가결한 업무 제외 업무)
○ 국가 및 지방 사무의 체계적 구분 및 발굴 ○ 국가 수준의 제도적 정비 방안 추진 ○ 필요 최소의 국가 사무를 제외한 국가 사무 및 지방 사무의 대폭 이양	○ 문해, 영재교육, 통일교육, 학부모교육 ○ 교육급여, 다문화, 탈북,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기초학력 보장 및 안전 관련 업무 등 ○ 유보통합 시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등	○ 교원관련 업무는 이양(교원의 지방직화 적극 추진) ○ 교육제도 및 국가차원의 형평성/공정성 유지 업무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법령제·개정권 제외 ○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외한 업무

주: 김민희·주효진·주동범·오세희(2018). 유보통합 및 초·중등사무 지방이양과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2(1). p.136.

3.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일반적으로 교육자치의 개념은 교육사무라는 사무의 제한성을 제외하면 지방자치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 다만, 교육자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결합된 제도로써 교육행정기관, 교육주체, 지방자치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둘을 분리하여 교육행정기관의 자치를 확보하려는 견해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되 교육분권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김진 외, 2022: 16).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데, 이 중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해 교육청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정 전출금 부담 등 지방교육 의무만 지고 지방교육의 결과와 교육사무 권한 등을 전적으로 교육청에 위임한다(김진 외, 2022: 20-21).

〈표 II-3-1〉 지방자치-교육자치 비교

일반행정(지방자치)		교육행정(교육자치)
지방자치법	근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당해 지역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적·지역적 사무(제13조)	사무의 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제2조)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 기관을 둠 - 법정전출금 등 지방교육에 대한 의무만 존재, 지방교육 결정권이나 교육 사무에 대한 권한 없음	비교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지방 교육의 특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과 책임 하에 지자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에 학예에 관한 사무 관장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담당	평생교육 업무	평생학습관에서 담당

자료: 금창호 외(2010:25); 나민주 외(2018:29); 윤서연 외(2021:6); 김진 외(2022:22)에서 재인용.

유보통합에 따라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일반행정 틀 내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는데, 유보 기능이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체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통할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최윤경 외, 2016: 164). 보육 기능이 시·도로부터 교육청으로 이전 및 통합되는 것은 다른 기능이 기관을 넘어 이전되는 것과는 달리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전까지 시·도 지사의 통제를 받던 기능이 교육감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저출산, 유보 서비스 등이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교육자치의 틀 내에만 둘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유보 기능을 통합 및 이전하는 경우,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통할을 받도록 조직편제상의 변화를 통해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최윤경 외, 2016: 164). 즉, 교육감을 시·도지사과 러닝메이트 형태로 선출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모든 기능이 일관되게 주민통제 아래 들어갈 수 있고, 그 결과 지방자치의 중요한 원칙인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민주적 책무성의 확보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최윤경 외, 2016: 164).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여 올해 6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제35조). 교육계에서는 이 조항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자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¹⁴⁾

한편,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구분됨으로 인하여 유보통합에 있어서도 몇 가지 쟁점을 갖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지방자치법상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한다는 점이다(교육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② 시, 군, 구로 구분되는데(지방자치법 제2조), 교육자치의 경우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

14) 한국일보, 2023.5.25일자 기사, '교육자유특구' 빠지고 '교육·지방자치 통합' 남은 특별법...조희연 "유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5410001552\(2023. 6. 2. 인출\)](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5410001552(2023. 6. 2. 인출)).

단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무는 기본적으로 시도 사무, 즉, 광역단위 사무가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구가 담당했던 기초단위에서의 보육업무는 교육자치로 이동시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시도 및 시·군·구에 계속해서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5조¹⁵⁾ 등이 규정한 “교육”에 ‘영·유아 보육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즉, 「지방자치법」 제135조 등의 교육에 영·유아 보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영·유아 보육’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관장 사무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 사무 중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임/위탁 규정 없이 일반 지자체가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지자체가 지방 사무가 아닌 국가 위임사무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 규정을 두는 방안이 적절하며, 만약, 「지방자치법」 제135조 등의 교육에 영·유아 보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면, 일반 지자체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사무 중 지방사무에 대해서도 위임/위탁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¹⁶⁾ 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에 ‘영·유아 보육 포함’을 추가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개정이 필요하며, 「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¹⁷⁾ 등에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고, 「정

15)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6)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2023년 6월).

17)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보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부조직법」 등을 개정하면서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관장사무 등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논쟁 및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잘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4. 유관 법률 검토

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비교

보육업무는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으며, 유아교육 업무는 기본적으로 「유아교육법」(교육부)에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는 양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각 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의 권한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1〉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상 각부 장관 및 지자체 권한 비교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각부 장관	교육부장관 -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 -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 중앙교육위원회 - 교육통계조사 - 방과후과정 기본사항 -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교원 자격취소 - 국립유치원 지도·감독(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휴업 및 휴원명령,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 보육실태조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 -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허가 -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 결정 -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시·도 단위	시·도교육감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시·도유아교육위원회 - 사립유치원 설립·폐쇄 인가 - 교육명령 - 유치원 설립의무 - 방과후과정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 마련 - 공립·사립유치원 지도·감독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 - 유치원 평가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연수 - 원장의 자격인정 - 수석교사의 자격 검정·수여 - 공립·사립 유치원 지도·감독(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휴업 및 휴원 명령,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 등) -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시·도지사 -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 -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기초 지자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어린이집(국공립제외) 설치 및 변경 인가 -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지원 조직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2호 및 4호는 보육진흥원) 1.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1의2.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어린이집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이용권에 관한 업무
기타	*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공통)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탁	- 지도·명령 - 보고 및 검사 - 휴원명령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어린이집 폐쇄 - 과징금 처분 - 청문 - 법위반사실의 공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공통)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나. 기타 유관 법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외에 유관 법률로는 「정부조직법」, 「국가교육위원회법」, 「교육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등이 있다.

〈표 II-4-2〉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법률

법명	내용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법명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육자치법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법명	내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11조(사무배분의 기본원칙)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

법명	내용
	무를 주민의 편의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③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제135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III

유아교육·보육 행정조직 및 업무 현황

01 중앙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02 지방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Ⅲ. 유아교육·보육 행정조직 및 업무 현황

1. 중앙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¹⁸⁾

교육부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육정책과 1개과 11명 및 7개의 유관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아교육정책과에서 유치원 관련 주요 기능을 담당하되, 책임교육정책실 4개 부서 및 교육자치협력안전국 3개 부서가 유치원 관련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표 Ⅲ-1-1〉 유아교육·보육 담당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조직 비교

교육부	보건복지부
• 1과(유아교육정책과) • 정원 11명('23.)	• 1국 3과 • 정원* 29명('23.) *보육 업무 담당

자료: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2023. 4.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담당 부서는 1국 3과(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설치·운영지원·점검·안전·위생, 보육교직원 자격·양성·처우개선,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어린이집 관련 기능, 부모급여, 부모교육(양육) 지원, 양육지원체계 개편 등 가정양육 관련 기능,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및 보육사업안내(지침) 등 수립, 보육통합시스템 관리, 보육실태조사, 법인·단체 관리 등 어린이집·가정양육 공통 기능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18) 이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내용, https://www.mohw.go.kr/react/sg/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2023. 4. 25. 인출); 교육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담당업무,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604&page=0604&s=moe>(2023. 4. 25. 인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III-1-2〉 직제규정상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업무 비교

유아교육 업무	보육 업무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3.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74. 유아 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75.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 제도의 개선 76.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3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 교육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조정 총괄 32. 영유아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3.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34.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 35.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 36.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37.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9.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40.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개선 4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 42.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5.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6.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 7.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정책 관련 교류·협력 8. 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 9. 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10. 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2. 유치원 평가 지원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⑰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 정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장산·결산 8.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9. 보육행정 전산화 10.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1. 보육개발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12.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유아교육 업무	보육 업무
13. 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 14.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15. 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16. 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 18.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9.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민인식 개선사업 13.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4. 보육통계의 생산 및 관리 15.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16.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17.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 18. 보육교직원의 경력 및 자격관리 1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의 수립 및 관리 20.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지원계획 수립 21.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⑮ 보육사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5.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8.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인건비 지원 10. 맞춤형 보육 자격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체계 기획·연구 및 일시보육 지원 ⑯ 보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어린이집의 기능 보강 등 환경개선 지원 3.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5.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6. 보육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의 관리 7. 어린이집 평가인증 계획 수립 및 평가인증 제도 운영 8.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협동어린이집의 활성화 10. 시간연장형, 종일형, 방과후 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한편,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분장하고 있는 업무 중 복지부에 남겨둘 업무와 이관할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의 개념에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이하의 업무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 외에도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이다. 보육업무 이관 범위 중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업무에 관한 인력과 업무 분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Ⅲ-1-3〉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육업무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정책(유아교육정책은 제외) 지원 정책 협의·조정·총괄
2. 영유아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3. 영유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4.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5. 보육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6. 보육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7. 보육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결산
8. 보육행정 전산화
9. 지방자치단체 보육공무원 교육
10. 보육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도·감독
11. 영유아 및 영유아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2. 보육 관련 대외협력 및 교류활성화의 지원
1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및 운영·관리
14. 영유아 및 부모 지원 보육서비스의 개발
15.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자료: 〈표 Ⅲ-1-2〉에서 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한편, 이하의 업무는 가정양육 지원 기능으로만 판단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이관 범위에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을 포함하는 경우, 이하의 업무는 이관 범위에서 제외하며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표 III-1-4〉 가정양육 지원 기능으로만 판단되는 보육업무

1.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자료: 〈표 III-1-2〉에서 제시된 보건복지부 업무 중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나. 지원조직

중앙단위에서 지원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업무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원과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보육 업무 지원 기관으로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있다.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원¹⁹⁾ 및 한국보육진흥원 조직의 업무를 비교하면 교원/교직원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유아 교육/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직원 자격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후 업무 이관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I-1-5〉 영유아교육원 및 한국보육진흥원 비교

구분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한국보육진흥원
법적 성격	국립대 부속시설 (공무원 조직)	기타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조직	3부 1실 1교육관	5본부, 18부
주요 업무	1.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과정 운영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운영 3. 유치원 교직원 및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직무연수 운영 4. 영유아 교육 관련 원격 연수 운영 및 평가 5. 영유아 교육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6. 영유아 교육 관련 연구 수행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아교육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지원	1.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2. 보육사업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4.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5.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 6.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s://iece.knue.ac.kr/main.php>(2023. 5. 15. 인출);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2023. 5. 15. 인출)에서 관련 내용 검색하여 정리함.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급에 따른 안전공제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및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안전교육 등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 기관 모두 안전사고 예방과

19) 기존 유아교육원에서 최근(2023. 5.) 영유아교육연수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s://iece.knue.ac.kr/main.php>(2023. 5. 15. 인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경우 안전공제회의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표 Ⅲ-1-6〉 학교안전공제회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비교

구분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법적 성격	교육부 산하기관(특수법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특수법인)
조직	사무총장, 1실 2부 2센터 7팀 1담당	사무총장, 3국 9팀
주요 업무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재외한국인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 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	1.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2.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3.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콘텐츠 개발과 보급
근거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
비고	중앙회 외에 17개 시·도 공제회 있음	

자료: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ssif.or.kr/>(2023. 5. 15. 인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sia.or.kr/>(2023. 5. 15. 인출)에서 관련 내용 검색하여 정리함.

2. 지방 단위 유아교육·보육 담당 조직 및 업무 현황

가. 광역 단위

1)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표 Ⅲ-2-1〉 시·도청 보육 담당 및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인력/부서 현황

시·도청(17개)	시·도교육청(17개)
• 전담 부서 없음 ※ 서울·경기·인천: 전담 부서 有 • 현원* 160명('23.4월) * 보육 업무 담당 ※ 사회복지, 일반행정직렬	• 전담 부서 없음 ※ 서울·경기: 전담 부서 有 • 현원 194명(정원 173명)('22.9월) ※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렬

자료: 보육 담당 인력은 각 시도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통해 연구진이 조사하였으며, 유아교육 담당 인력은 문무경 외(2022:163-165) 참조.

시·도청과 시·도교육청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어 설치지역은 동일하다. 또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모두 전담부서(보육/유아교육만을 담당하는 ‘과’단위 이상의 부서를 말함)가 있다. 다만, 시·도청의 경우 사회복지와 일반행정직렬 공무원이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 및 교육행정직렬에서 유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III-2-2〉 시·도청 보육담당 인력 및 부서 현황

시·도	담당 과	소관팀 수	현원(명)
서울	영유아보육담당관	5팀(영유아정책팀, 영유아지원팀, 영유아기반팀, 보육사업팀, 특화보육팀, 보육관리팀)	30
부산	출산보육과	3팀(보육행정팀, 보육평가팀, 보육지원팀)	15
대구	출산보육과	2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8
인천	영유아정책과	3팀(영유아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16
광주	아동청소년과	1팀(보육팀)	8
대전	아동보육과	1팀(보육지원관리팀)	9
울산	복지정책과	1팀(출산보육팀)	5
세종	여성가족과	2팀(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9
경기	보육정책과	5팀(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육컨설팅팀, 보육품질관리팀)	23
강원	복지정책과	1팀(보육지원팀)	4
충북	복지정책과	1팀(보육지원팀)	4
충남	복지보육정책과	1팀(보육지원팀)	5
전북	사회복지과	1팀(보육정책팀)	6
전남	여성가족정책관	1팀(보육지원팀)	4
경북	여성아동정책관	1팀돌봄보육팀	5
경남	가족지원과	1팀(보육팀)	6
제주	아동보육청소년과	1팀(보육정책팀)	3
총계			160

자료: 각 시도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통해 연구진이 조사함(2023. 4. 기준).

2) 조례에 따른 시·도 보육 업무 분석

17개 시·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보육업무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공통업무로는 보육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다음과 같은 16가지 업무를 도출할 수 있었다.

〈표 III-2-3〉 조례상 17개 시·도 공통업무(보육)

1. 보육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사항

4. 가정양육수당 지원
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 어린이집 지원
7. 어린이집 안전관리
8. 어린이집 평가
9. 직장 어린이집 설치
10.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
11. 보육료 지원
12. 장애아 보육 지원
13.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
14.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15.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자료: 17개 시·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분석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한편, 17개 시·도마다 각각의 고유사업(자체사업)도 파악되었는데, 주로 보육특수시책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4〉 조례상 17개 시·도 고유업무(보육)

인천시 - 특수보육시설 / 혁신육아복합센터 운영
대구시 - 공공보육 지원
광주시 - 외국인가동 지원
세종시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및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경기도 - 아이사랑놀이터 / 0세아 전용시설 / 영유아 생활체험실 설치
충청북도 - 보육정보센터 운영
충청남도 - 자연놀이뜰 및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 보육특수시책사업 발굴·추진
전라북도 - 보육사업 유공자 표창 / 보육교사 역량강화 연수 /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전북형 무상보육 지원

자료: 17개 시·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분석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나. 기초 단위

1) 시·군·구청과 교육지원청

〈표 Ⅲ-2-5〉 시·군·구청 보육 담당 및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인력/부서 현황

시·군·구청(226개)	교육지원청(176개)
• 전담 부서 지역별 편차 존재 • 현원* 1,644명('23.4월) * 보육 업무 담당	• 전담 부서 없음 • 정원* 283명 내외('22.9월) * 1명이 초등, 특수 등 타 분야 업무도 수행

자료: 보육 담당 인력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통해 연구진이 조사하였으며, 유아교육 담당 인력은 문무경 외(2022: 53-61) 참조.

기초단위의 경우 광역단위와는 다르게 담당인력의 차이가 큰데, 이는 보육업무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대민서비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하는 기관수가 유치원은 전국적으로 약 8,500개인데 반하여 어린이집의 수는 약 3만개가 넘어 관리해야 할 기관수의 차이도 크다.²⁰⁾

〈표 III-2-4〉 시·군·구청 보육담당 인력 및 부서 현황

단위: 개/명

시·도	소관 시·군·구	전담팀 시·군·구	혼합팀* 시·군·구	현원
서울	25	25	-	338
부산	16	10	6	93
대구	8	8	-	46
인천	9	7	2	97
광주	5	5	-	34
대전	5	5	-	36
울산	5	4	1	34
세종	-	-	-	-
경기	31	29	2	449
강원	18	4	14	63
충북	11	5	6	58
충남	15	9	6	59
전북	14	6	8	59
전남	22	7	15	61
경북	23	9	14	78
경남	17	8	9	122
제주	2	2	-	17
총계	226	143	83	1,644

주: 혼합팀이란 여성·아동·가족 업무를 동시에 분장사무로 가지고 있는 팀을 의미함.
 자료: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통해 연구진이 조사함(2023. 4. 기준).

2) 조례에 따른 시·군·구 보육 업무 분석

서울에 있는 기초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분석한 결과 25개 지역구 대부분 보육종합계획수립·시행,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어린이집 설치/운영/지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및 교육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20) [부록 2] 17개 시·도별 영유아 및 유아교육·보육 업무 조직 현황 자료 참고.

〈표 Ⅲ-2-5〉 조례상 서울 25개 자치구 공통업무(보육)

1. 보육종합계획 수립·시행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4. 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도
5.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6. 보육교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

자료: 각 자치구 보육조례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다. 지원조직

〈표 Ⅲ-2-6〉 유아교육진흥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비교

구분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적 성격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공무원조직)	대부분 민간위탁이나,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음 (ex) 동작구 보육청)
규모	전국 15개	중앙1, 지방 128, 지방 분소 275개
주요 업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 교육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정보 수집·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敎具) 제공 또는 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컨설팅,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정보 제공, 부모 상담·교육,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부모·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등
근거 법률	유아교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자료: 문무경 외(2022: 26-27);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2023. 5. 1. 인출) 참조.

지방단위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은 각 시·도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시·도 단위에만 설치되어 있는 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에서도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지 못한 곳은 시·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두 기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이나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개발 등에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두 기관을 통합할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보육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시·

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사업과 가정양육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은 시·군·구처럼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초지자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공백이 커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IV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방단위 업무 및 인력 분석

- 01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통-필수 이관 업무 설정의 근거 및 필요성
- 02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영역 비교 통한 통합(안) 모색
- 03 지자체 사례조사

IV.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지방단위 업무 및 인력 분석

1.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통-필수 이관 업무 설정의 근거 및 필요성

유보통합의 이행을 위해 앞서 3장에서 유아교육·보육을 관장하는 현행 행정조직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았고, 이에 기초하여 이관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보육 통합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고려할 때, 현행 조직과 업무 분장 ‘현황’에 기초한 이관업무의 설정은 다양한 접근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보육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핵심 이관업무의 도출을 중심으로 하되) 이 절에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지향점으로서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의 산술적 이동과 결합이 아닌, 보육에서 교육으로의 이관이 갖는 시너지 효과를 내재한 새로운 범주로서의 유아교육·보육 핵심 공통 업무 영역과 범주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관이 필요한 공통의 핵심 업무와, 유·보 간에 차별화 된, 그리고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통합된 업무영역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첫째,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공통된 핵심 의제로 인식되고 범주화된 업무 영역을 살펴보고 [국내외 ECEC 핵심과제 및 어젠다 분석], 이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5개년 기본계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업무 분야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ECEC 분야 핵심과제와 업무영역은 사실상 공통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서로 일치하였다.

이어서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 현행 이원화 된 행정관리 체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청·지자체 업무현황 자료(예: 서울)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공통 및 전문화/차별화 된 업무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유아교육·보육으로 통합된 업무가 현재의 업무 현황과 과제를 단순히 합치고 옮기는 것에서 나아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협력 시너지 효과로 담아낼 필요가 있는 미래지향적 업무 영역까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 국내외 ECEC 어젠다 분석²¹⁾

1) ECEC 주요 정책 영역

국제적으로 ECEC 어젠다는 매일의 기관 환경에서 아동이 양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우수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유의미한가에 대해, 즉 생애초기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과 경험이 미치는 누적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일관된 연구결과 보고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간과 설비, 교직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물리적 질 요소(structural quality) 외에 과정적 질(process quality)로서 상호작용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학습 및 웰빙이 가능한 과정적 요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OECD ECEC 사무국에서는 ‘규제보다 질(quality beyond regulation)’ 사업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요건과 이를 위해 정책 과정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21).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주요 의제를 반영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이행과 성과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또한 생애 초기 양질의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equity)과 취약계층 등 모든 계층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성(inclusiveness)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률(등록률)을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으며, 3-5세 유아에 비해 0-2세 영아기 서비스 이용률의 차이가 성장발달과 교육 수혜에 있어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아 서비스 이용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영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과 포괄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21). 즉,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시간 양질의 서비스 이용과 공식화된 기관 환경의 제공이 중요함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유보통합의 모델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러한

21) OECD(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ecutive Summary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및 정리함.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 (2023. 6. 10 인출)

경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OECD Starting Strong Series를 통해 논의되어 온 유아교육·보육의 핵심과제 및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즉 매일의 아동 일상 속 상호작용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동력으로, (1)질에 관한 기준과 거버넌스·재정, (2)교육과정과 교수법, (3)교사, (4)질관리 모니터링/데이터, 그리고 (5)가족-지역사회 연계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사 인력에 관한 정책이 중요하며, 가족-지역사회 연계 또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중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OECD, 2021: 15).²²⁾

한편 ECEC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지방-지자체 정부 간 역할 및 책임 분담에 대해 재정(Financing), 서비스 질에 관한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 setting), 커리큘럼 개발(Curriculum Development), 질관리 모니터링(Monitoring on ECEC)의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OECD, 2015 26; 최윤경 외, 2016: 27). 제시된 4개 업무영역에 대해 중앙-지방/주-기초지자체에서 동시에 또는 분리해서 관장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호주와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통합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요 정책/업무의 대부분이 지방분권화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ECEC 정책 과제 외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주요 의제로 UNESCO와 유보통합의 대상이 되는 요소에 대한 ECEC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주요 어젠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22)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음.

Five policy levers, or drivers, are identified as instrumental tools for building ECEC systems that can foster quality in children's everyday interactions. The levers are: 1) quality standards, governance and funding (질관리체계, 거버넌스, 재정/비용지원); 2) curriculum and pedagogy (교육과정/교수법(상호작용 포함)); 3) workforce development (교원 인력); 4) monitoring and data (질관리 모니터링 및 관련 데이터/시스템); and 5)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가족-지역사회 연계).

The present report conceptualises the linkages between these policy levers and process quality, with a particular focus on curriculum and pedagogy and workforce development, while noting the cross-cutting nature of the remaining levers, principally 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OECD, 2021:15).

〈표 IV-1-1〉 유아교육·보육 공통 어젠다

UNESCO 교육목표	OECD ECEC 정책과제	유보통합 8요소
접근성(Accessibility)	양질의 목표와 최소기준 (Quality goals & Regulations)	행정(Administration)
비용지불능력(Affordability)	커리큘럼과 학습기준 (Curriculum and Standard)	규제(Regulation)
형평성(Equity)	교직원의 질 (Qualification, Training, and Working Condition)	커리큘럼(Curriculum)
질(Quality)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 (Collaboration with Families and Communities)	접근성(Access)
	데이터와 연구, 모니터링 (Data, Research, & Monitoring)	인력(Workforce)
		재정지원(Funding)
		서비스유형의 다양성(Provision)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통합된 인식(concept)

자료: 최윤경(2017).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발표자료.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 (2017. 7. 14).

2)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업무영역

우리나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보육증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기본계획의 경우 2009년 유아교육 선진화계획(‘09-’12)에서부터 시작하여 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3-’27)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구성되는 핵심요소가 있다. 이는 교육과정(방과후과정 포함)과 교원, 그리고 유아교육 지원체계(학비부담경감, 유치원운영 효율화 포함)의 3개 요소로 4회에 걸친 기본계획을 통해 빠지지 않고 공통의 핵심과제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제3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양질의 유아교육, 미래교육 인프라로 우수한 ‘질’(quality)과 저출산과 유아 환경의 디지털화 등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대응으로서 지역 특성에 따른 국·공·사립 기관의 병·단설 유형과 규모의 운영, 그리고 실내외 공간, 누리포털과 거버넌스, 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립유치원 회계-K에듀파인, 입학관리시스템) 등 ‘인프라’의 중요성과 유초연계 및 학교급간 연계협력이 강조되는 확장성을 보이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3. 4).

〈표 IV-1-2〉 유아교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핵심 추진 과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선진화 추진 계획 ('09-'12)	제1차 ('13-'17)	제2차 ('18-'22)	제3차 ('23-'27)
비전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실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1	유아학비 부담 경감	유아교육 기회 확대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선진 유아교육제도 구축	유치원 운영 효율화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 중심 교육문화 조성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3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방과후과정 내실화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4	우수 교원 배치·활용	교원의 전문성·자긍심 강화	유아교육 혁신을 통한 행정시스템 구축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5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	-	-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4).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중, 〈수립배경 및 그간 유아교육분야 중장기계획 주요 내용〉. p.9의 내용을 정리함.

지난 2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중심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과 취약 유아 지원까지 담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학부모 참여와 급간식과 보건 등 안전한 환경을 강조하는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3차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있다.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IV-1-3〉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027)

비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분야 국가책임 강화		
정책 목표	- 모든 유아에게 격차 없는 출반선을 보장 - 자율성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지능형 나이스 안착을 통한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핵심과제		추진과제	
I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 유보통합 및 3-5세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운영모델 다양화 - 유아교육기관 교육여건 개선 - 디지털 치유 및 안전한 디지털 경험 지원 - 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 확대	

핵심과제		추진과제
II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 유아교육지원체제 개편 및 자율성 강화 - 교육과정 내실화 및 유·보·초 연계 지원 - 방과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 체계적인 보호자 지원
III	교원 역량강화 및 권익 증진	-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 다양한 지원 확대 및 자격제도 활성화 - 교권의 보호와 권익 증진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IV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 지능형 나이스 안착 -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미래형 교육인프라 조성 - 누리포털 고도화 및 거버넌스 확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4). 제3차 (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p. 9.

보육 기본계획의 경우, 2006년 새싹플랜('06-'08, 여가부)에서 시작하여 (1차 보완) 아이사랑플랜('09-'12),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3-'17), 제3차('18-'22), 제4차('23-'27)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이르고 있다.

보육 기본계획은 '부모 비용부담 완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지원',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질 관리' 위주로 정책의 핵심과제가 구성되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역량'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전달체계와 지원체계', '보육서비스 기반'에 대한 핵심과제 구성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금지원 등 '부모 양육지원의 확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기본보육-연장보육으로의 구분(운영시간, 이용시간, 근로시간)이 논의되었다.

〈표 IV-1-4〉 보육 기본계획 핵심과제

핵심 추진 과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 ('09-'12)	제2차 ('13-'17)	제3차 ('18-'22)	제4차 ('23-'27)
비전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1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2	수요자 맞춤 지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보육체계 개편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3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공공성 확대 와 품질관리 강화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핵심 추진 과제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아이사랑플랜 ('09-'12)	제2차 ('13-'17)	제3차 ('18-'22)	제4차 ('23-'27)
4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양질의 안심보육 여건 조성	부모 양육지원 확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5	전달체계 효율화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	-
6	보육사업 지원체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자료: 보건복지부(2022. 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중, 〈수립배경 및 그간 중장기 보육계획 주요 내용〉. p.11의 내용을 정리함.

유아교육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교육과정(커리큘럼과 교수법)’ 운영과 ‘교육환경 구성’, ‘미래교육 대응’의 측면에서 핵심과제의 구성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주요과제와 핵심 업무의 범주와 주요 어젠다에 상당부분 공통점과 특징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차 중장기보육 계획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1-5〉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 계획안(2023-2027)

비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정책 목표	-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		
핵심과제		추진과제	
I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으로 영아기 양육비용 경감 -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으로 부모 양육역량 강화 - 육아 건강·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II	영유아 중심 보육 서비스 질 제고	- 어린이집 보육 최적의 환경 조성 - 어린이집 품질관리 체계 개편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권리존중 확산 - 놀이 중심 보육 과정 내실화	
III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체계 고도화 - 보육교직원 전문역량 강화 -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환경 조성 -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및 합리적 처우개선	
IV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 어린이집 안정적·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육의 사각지대 예방 - 전달체계, 시스템, 홍보 고도화	

자료: 보건복지부(2022. 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p.11.

나. 미래지향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

국내의 유아교육·보육 핵심과제(어젠다)와 최근에 강조되는 주요 동향(키워드), 그리고 현 시점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담당부서의 업무현황(예: 서울)을 살펴보았을 때, 향후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업무로서 미래교육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 통합된 업무는 현행 유아교육·보육 업무의 공통점과 각 특장점(전문화·차별화된 업무), 그리고 미래에 교육과 돌봄이 연속성 있게 제공되는 양질의 통합된 환경에서 예상되는 업무라 할 수 있다.

우선 통합된 영유아교육과정의 운영을 비롯하여, 첫째, 저출산의 기조로 지역별로 인프라 규모와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관 서비스/프로그램과의 연계협력과 통합 운영’이 요구된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유관 서비스/프로그램과의 확장된 연계협력과 통합적 (또는 거점형) 운영은 유보통합 업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서비스 질 평가와 모니터링,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평가와 모니터링은 서비스 및 기관 대상으로 국한되지 않고 교원평가, 나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업무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평가와 모니터링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서비스 및 교원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놀이 중심의 실질적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 평가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정책이 교육과정과 교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돌봄을 포괄하는 ‘광의의 교육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부모교육과 부모참여, 지역사회 연계와 유관기관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확장된 연계협력으로서 통합된 광의의 영유아교육 실행이 미래지향적 유보통합 업무에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영유아보육법상) 가정양육지원의 업무 이관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및 수요자 부모의 참여와 구체적 연계협력을 반영하는 교육정책이다. 또한 장애-비장애 통합교육과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통합 어젠다의 실현이 유보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통합의 효과와 이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IV-1-6〉 미래지향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업무(안)

ECEC 공통 핵심업무	최근 동향(추가)	미래 유보통합 통합 업무 (공통필수기능+통합어젠다)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돌봄(틈새돌봄, 방학, 긴 급돌봄, 돌봄공백의 이슈) • 실내외 놀이중심 • 원격교육(디지털전환) • 다양한 연계협력-이음교육	• 영유아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방과후과정-돌봄, 놀이) • 지역별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급간 통합·연계 운영
교원/인력: 양성·자격·처우-연수-평가, 직원/보조인력 운영		• 교직원 배치, 양성/연수, 급여, 복지
질관리: 평가, 컨설팅/장학		• 질관리(컨설팅장학)와 평가
*평가: 서비스, 교원, 아동	아동(developmental outcome) 관점: 아동권리, 발달모니터링, 상담/정신건강, 급식-건강안전	• 아동발달 모니터링 및 종합적 지원
인프라 및 수급 관리-설치 운영	• (또다른 의미의) 통합 거점 • 공간: 위치, 시설·설비	• 인프라-전달체계 관리-시설설비-공간 운영 (기준)-공공성/접근성 제고
비용지원(인건비-운영비,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등)		• 부모 교육비·보육료(표준비용) • 기관운영비/교직원인건비 지원
부모협력, 지역사회 연계	연계/전이(trasition-유초연계, collaboration, integration, continuity) :교육·보육·돌봄-보호-건강·의료	• 부모참여와 지역사회 연계 • 유초연계와 전이, 유관기관 협력
행재정시스템(회계), 통계 자료	디지털 플랫폼/포털 운영	• 회계관리, 행재정시스템, 통계 • 수요자 (통합) 플랫폼 운영
	장애통합	• 장애-비장애 통합 교육
	취약계층 포괄적 지원 (Inclusiveness)	•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계층 포괄 지원 확대

주: 연구진 작성

다. 유아교육·보육 공통 업무 이관

앞서 살펴본 ① 국내외 ECEC 정책 핵심과제 분석과 ② 현행 이원화 체제 하 유아교육-보육 업무 현황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에서 교육부 산하로 관리체계를 이관한 이후, 유보통합의 소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및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통합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이관업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²³⁾.

23) 해당 업무 인력과 예산에 대한 이관이 완료된 이후로 가정한, 이관업무 분석임.

우선 통합된 업무 수행은 유아교육·보육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성과 이행점검과 관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책 업무분석과 이관업무 유형의 파악을 통해서도 파악되는 부분이다. 세부적으로 유아교육·보육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원/기관 현황과 교원/인력 수급 계획의 수립 및 관리, 원아/재원아동 파악이 포함되는데, 필수적으로 공통 관리될 필요가 있는 인프라 요소(기관, 교사, 영유아)를 파악하여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기본계획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행해 온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확충과 같은 공공성 전략을 어떻게 이행·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공통의 업무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공영형 유치원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도 세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국내외 ECEC 핵심과제와 기본계획 업무를 통해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1) 교육과정(방과후과정과 돌봄 포함)과 교원/교사 양성과 자격관리, 인적 DB 구축에 관한 것이다. 이는 교육·보육 정책의 핵심 분야로, 교육과정과 교원 업무는 우선 이관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수요자 부모와 영유아 관점에서는 1차적으로 서비스 이용 신청과 비용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한 (2) 행정 시스템과 관련 회계 운영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분할된 형태에서라도 기존대로 업무공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통합시스템의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정보 플랫폼까지 고려할 경우 중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이원화 된 체계에서 이루어지던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지원과 대민 업무의 수행이 일정수준 공백과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관이 1차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그 다음으로 유보통합의 목표에 해당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장학/컨설팅과 질 관리 모니터링이 유아교육·보육의 공통된 기준으로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당장에 큰 틀의 변화가 없어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리체계 통합에 따라 공통의 일관된 기준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컨설팅 지원과 질 관리 모니터링의 적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 업무의 특성이자 차이로 볼 수 있는, 지도점

검의 관리규제와 장학/컨설팅의 유연한 운영 간에 합리적인 접점과 통합된 질 관리 업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숙제가 있다 하겠다.

넷째, 그다음으로 큰 업무영역은 시설 설치인가와 관리 및 (개보수/시설설비기능보강)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양한 기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업무체계를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섯째, 온종일돌봄과 시간제보육, 취약보육의 운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백과 단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으며, 여섯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연계와 가정양육지원 업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 이행의 기준을 제시할지 혹은 지역별로 해당 영역의 업무이관 범위를 설정하도록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로써, 첫째, 우선 이관이 필요한 공통 핵심 업무 중에서 유보통합의 이행 과정에서 당장의 업무 공백과 단절이 발생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큰 문제가 되는 부분(예: 서비스 이용 신청과 비용 지원, 교사수급과 인프라 관리, 기관 운영지원과 대민 서비스 대응)부터 담당인력을 확보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둘째, 유보통합의 핵심 업무인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과정과 교원/교사 업무가 이관되어야 통합 관리체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기타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의 운영과 질관리체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담당인력과 업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별로 영유아 수와 기관 인프라 규모가 작은 경우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업무에 대해 담당인력을 배치하는 일괄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업무이관이 될 것이다.

중앙의 교육부 산하로 관리체계를 이관한 이후, 유보통합의 소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업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영역(교육부/교육청으로 업무이관)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7〉 통합업무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영역

우선 순위	설명	유아교육 업무	보육 업무	비고(인력운영 등)
0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기관인프라/수급의 계획·관리 통합 수행	(제3차) 중앙-지역 유아교육발전 기본-실행 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유치원인프라/교원 수급계획 및 관리	(제4차) 중앙-지역 중장기보육 기본-실행 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어린이집인프라/교사 수급 계획 및 관리	일정기간 유아교육-보육 담당인력이 협업 수행
	3-5세 누리과정통합으로 우선 실행 필요 및 기능	유아교육과정(누리과정운영) +방과후과정(토돌)/ 유치연계	표준보육과정 (기본-연장보육+야간토돌) 운영 및 초등전이	(기본)교육과정 운영의 경우, 교육청 담당인력이 초기부터 어린이집 3-5세 운영까지 포괄하여 업무수행하는 방안검토
	급변 유보통합의 의의로 교사통합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처우개선→서비스 질향상으로 이어지길기대	교원(자격, 양성/연수, +DB구축)	보육교사(자격, 양성/보수교육, +DB구축)	신규 영유아통합교사 양성배출에 관한 업무는 교육청 기존인력 담당, 기존 교사자격 전환 업무는 새로운 인력 배치 필요
1	상이한 비용체계 (원비자물-보육료상환등)를 어느수준에서 통합모델을 마련하여 부모 부담완화와 선택권제고의 2개 목표를 달성할지 고민 필요	비용지원(표준유아교육비 산출, 유아학비지원, 교사 인건비/처우개선비 지원 등)	비용지원(표준보육비용 산출, 보육료/추가보육료지원+가정양육수당, 기관운영 및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등)	부모가 체감하는 1차적인 부분으로, 현재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어느수준에서 통합적인 비용지원체계를 마련할지, 부모-기관-교사 지원으로 구분하여 마련 필요→이후 통합 업무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
		회계운영/행·재정 시스템		병행운영 및 통합시스템 마련 필요 + 교사(인력)DB 구축도 반영 검토

우선 순위	설명	유아교육 업무	보육 업무	비고(인력운영 등)
	기관지원 및 대민업무 공백없이 지속 필요	유치원 지원 및 대민업무	어린이집 지원 및 대민업무	기관지원과 대민업무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인력 우선 배치
2	교육과정-교사통합이 잘관리 체계화로 이어지도록 함.	장학/컨설팅, 유치원평가	질관리(어린이집 의무평가/사후방문지원, 교육과정 등 컨설팅)	중기적으로 교육청의 장학컨설팅과 보육진흥원 중심의 어린이집평가/컨설팅 운영에 대한 일원화 된 질관리체계 마련
	기본보육-연장보육 외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운영 지속	(온종일돌봄)	+ 시간제보육/취약보육/지도·점검/시설·설비 기능 보강	어린이집에 특화된 부분으로 기존 어린이집담당자의 업무계속(아중단)필요
3		-	+ 가정양육 지원	근번 유보통합 관리체계 통한 1,2단계에 가정양육지원까지 반영할지 검토 필요

2.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영역 비교 통한 통합(안) 모색

가. 분석 방향 및 전략²⁴⁾

1) 유아교육과 보육업무 영역 비교 통한 통합(안) 모색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구조에 맞추어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체계를 유지하여, 업무 통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시·도(시·군·구)의 조직도상의 유아교육업무와 보육업무를 비교·분석하였다.

2) 보육업무 분석 기준: 업무 수 및 비중

보육 업무조사지²⁵⁾를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및 수준은 서울시와 전라남도이며, 시·도청 및 시·군·구청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3) 보육업무 담당인력 특성 분석: 직제 및 정·현원

보육업무 부서 직제와 부서의 현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 및 수준은 17개 시·도청이다.

나. 유아교육 업무 영역 도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업무분석(조직도 상 업무분장, 조례 명시 사항)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크게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2) 유아교육 사업 및 운영 지원, (3) 교육 및 사업 예정산, (4) 거버넌스 및 시스템, (5)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6) 지원센터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24) 이 장에서는 17개 지자체 보육 관련 조례를 참고하였음. 보육 세부 업무 분류는 보건복지부(2023)의 보육사업 안내 및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무 구분 세부 기준은 지방행정실 선거의회과(2015)의 국가와 지자체간, 자치단체 간 사무 구분 기준 및 사례를 기준으로 하였음. 끝으로 사무 및 서무 기준은 행정자치부(2015)의 서무업무 종합 매뉴얼을 기준으로 함.

25) 서울 및 전남지역의 광역단위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보육업무를 각 시도청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인출(2023. 4. 기준)하여 영역별로 코딩함.

〈표 IV-2-1〉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업무분석

1.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교육과정, 교수학습지원, 평가, 장학 안전 등 사항
2. 사업 및 운영지원: 방과후 과정, 교원인사 등 사항
3. 교육 및 사업 예결산: 인성교육, 생태전환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사항
4. 거버넌스 및 시스템: 전산시스템, 학습공동체, 이음교육 운영, 연수 지원 등 사항
5.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컨설팅 장학, 급간식, 통학지도, 안전교육, 시설 및 환경관리 등 사항
6. 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관련 사항

다. 지자체 보육업무 영역 도출

1) 지자체 업무 탐색 초점

〈표 IV-2-2〉 지자체 업무 탐색 초점

포함: 보육 업무
 제외: 출산(대구, 인천, 광주), 육아(인천), 아동 정책 및 복지(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여성(세종, 전남), 인구가족(세종) 부서
 생략: 국회 및 시의회 사무, 지원 업무, 일반 서무(과 예결산 등), 기타 업무

2) 지자체 보육 업무 영역화

지자체 보육 업무분석(조직도 상 업무분장, 조례 명시 사항,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보육 사업 안내)을 통해 고찰한 결과, 크게 8가지 업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2) 사업 및 운영지원, (3) 교육 및 사업 예결산, (4) 지역 특화 사업, (5) 거버넌스 및 시스템, (6) 육아종합지원센터, (7)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8) 보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등으로 업무를 영역화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보육 업무를 영역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3〉 유아교육보육 업무 영역 개요

1.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 영역개념: 기획 및 개발
 - 공통사항: 종합계획(중장기, 세부) 수립,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평가 및 성과관리, 법령/조례/규칙 관련 업무

2. 사업 및 운영 지원

- 영역개념: 집행 및 관리
- 공통사항: 교직원 인사 관련 사항, 평가 및 장학, 대체교사지원사업

3. 교육 및 사업 예결산

- 영역개념: 사업 집행 업무
- 공통사항: 영아 수당·가정양육수당지원 및 정산, 교직원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화 사업

- 영역개념: 지역 고유 업무
- 특이사항: 지자체의 경우, 서울(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AI 활용보육 등 특화보육 개발), 인천(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사업, 혁신육아복합센터)

5. 거버넌스 및 시스템

- 영역개념: 외부 기관과의 협력,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공통사항: 부모님 및 민간단체 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통계자료 관리
- 특이사항: 유치원, 어린이집 시스템 통합(안) 마련, 사립 기관 고려 사항

6. 지원조직

- 영역개념: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관
- 공통사항: 어린이집/유치원 컨설팅, 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 기능, 부모 교육 및 상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놀잇감 대여 등 지원 기능

7.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 영역개념: 조사 및 점검 업무
- 공통사항: 부모 모니터링(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8. 보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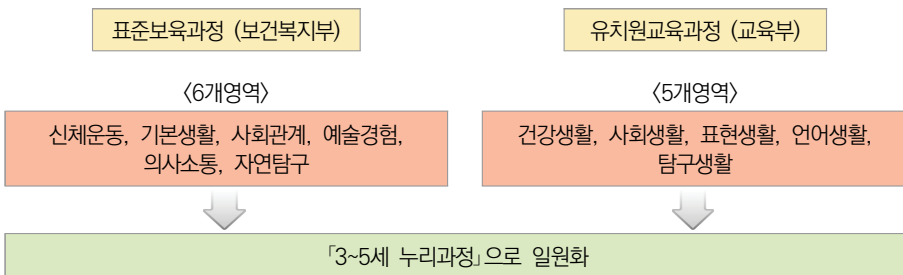
- 영역개념: 자문 및 교육
- 공통사항: 정책위원회, 의회 지원 업무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교육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

라. 17개 지자체 보육업무 영역화²⁶⁾

1)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기획 및 개발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은 보육사업 종합계획(중장기, 세부) 수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평가 및 성과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및 보육품질관리, 법령/조례/규칙 관련 업무이다. 특이사항은 만3~5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 구축한다는 점이다.

[그림 IV-2-1] 3~5세 누리과정 일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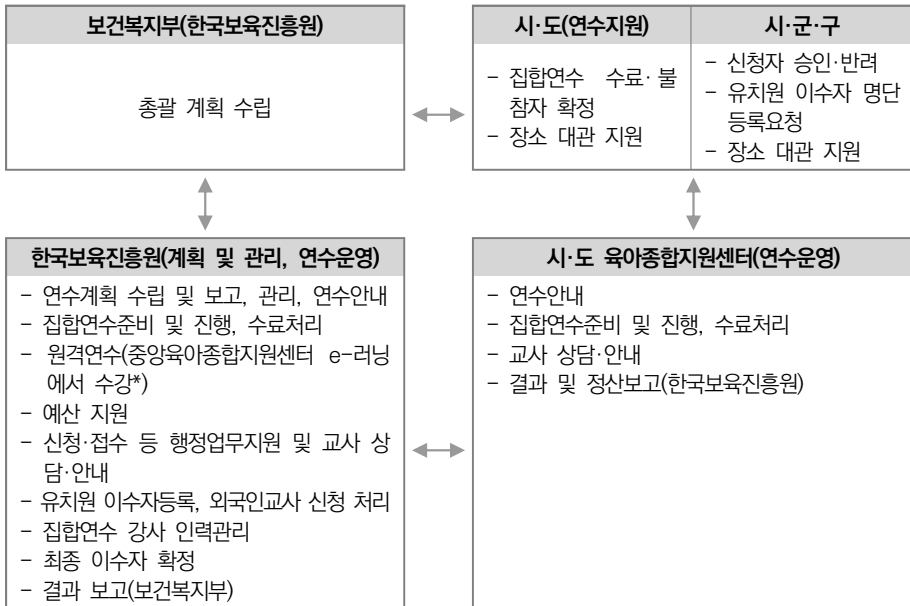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던 예산을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였다. '15년부터 누리과정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관리체계는 복지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 체계 유지하였다.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은 1·2급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교사는 연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²⁷⁾

26) 이하의 내용은 각 시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및 업무에서 인출(2023. 4. 기준)한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하여 분석하였음.

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인구아동, <https://www.129.go.kr/faq/pfaq03.jsp?n=6415>(2023. 6. 1. 인출).

[그림 IV-2-2] 누리과정 연수 체계



〈표 IV-2-4〉 누리과정 업무체계 분류(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주요내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	협조기관
1. 만3-5세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단계 등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 마련	•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 예산 집행: 시·군·구 교부	• 시·도에서 교부 받은 금액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약하여 어린이집 지원 •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보장결정) 보육담당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보육료 예약 등 관련 업무협조
2. 3-5세 누리과정	• 누리과정 고시, 해설서, 지침서 및 프로그램 개발	•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관련 업무 협조	•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관련 업무 협조	• 육아정책연구소: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지원 • 한국보육진흥원: 해설서, 지침서 등 개발 지원 및 홍보
3. 만3-5세 담당교사 연수	• 교사연수 총괄계획 수립	• 업무협조	• 업무협조	• 한국보육진흥원: 교사연수 실행계획 및 관리 총괄 지원 (예산 지원 포함)

주요내용	복지부	시·도	시·군·구	협조기관
3-1. 이수자 등 관리	• 정책 총괄	• 업무협조	•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연동 요청 공문 발송(한국보육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유치원 이수자 및 외국인교사 연동신청 처리, 최종 이수자 확정, 누리과정 연수 결과 보고(보건복지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수 결과 및 정산보고(한국보육진흥원)
4. 처우개선편비,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및 관리	•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 시·도교육청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을 처우개선편비, 운영비로 시·군·구에 교부	• 시·도에서 교부받은 교부금 집행 • 처우개선편비: 교사용장에 입금 • 운영비: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	• 사회보장정보원 • 누리과정 운영 모니터링 등 업무협조
5. 사후관리 및 컨설팅	• 만3-5세 누리과정 운영기준 등 마련	•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 누리과정 운영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컨설팅 • 사회보장정보원: 누리과정 운영 기준 준수 등 사항 모니터링

주: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p.296-297.

2) 사업 및 운영 지원²⁸⁾

집행 및 관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아동 수, 접근성, 저소득층 비율 및 어린이집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선 설치 필요지역 선정), 대체 교사 지원 사업(보육교사가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 연장형 보육(시간만큼 시간당 일정 비용(1천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지원(시간만큼 시간당 일정 비용(1천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이 있다.

28)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2023. 6. 1. 인출).

〈표 IV-2-5〉 시간제보육 관리기관(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구 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직위)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채용조건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담당 업무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	
비고	• (2017년 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 • 관할 제공기관 30개반(지정기준) 당 관리자 1인 추가 배치	

주: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03.

3) 교육 및 사업 예결산

집행 업무와 관련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정산,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지원 및 정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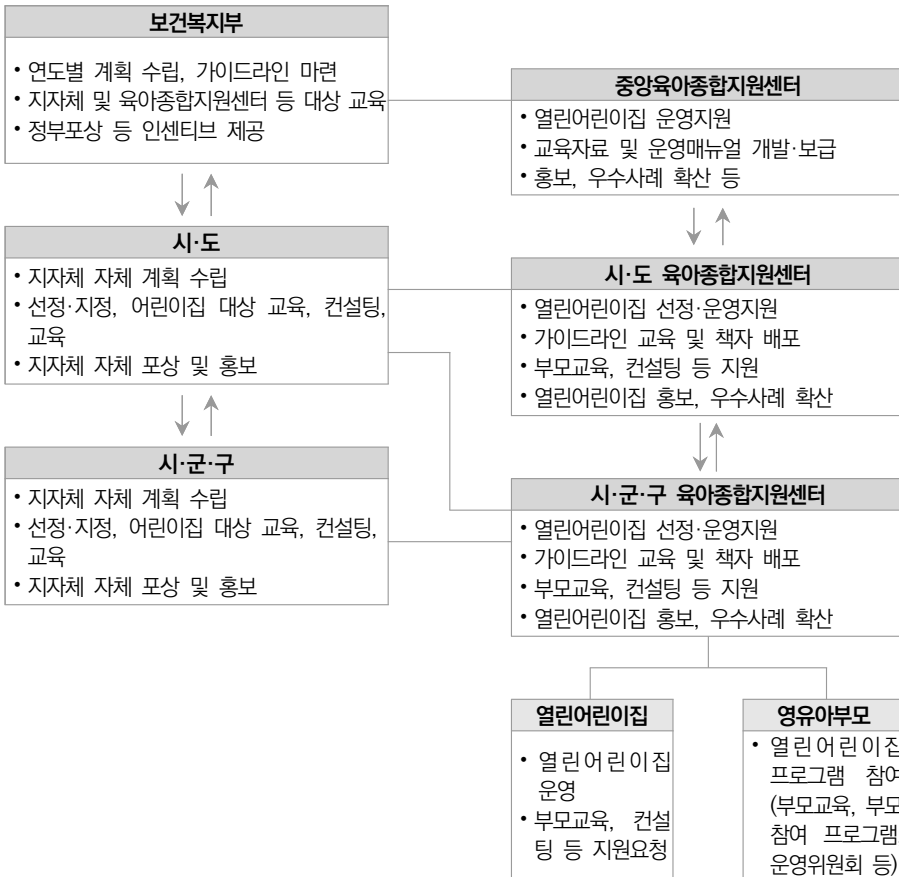
4) 지역 특화 사업

고유 업무와 관련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AI 활용보육 등 특화보육 개발이 있고, 인천은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사업,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 거버넌스 및 시스템

외부 기관과의 협력, 운영 효율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간단체 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보육통계자료 관리가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서울, 경기, 대구, 인천), 열린 어린이집 운영이 있다.

[그림 IV-2-3] 열린어린이집 관리 체계



주: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146.

6)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이다. 공통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보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놀이 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놀잇감 대여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있다. 예산의 경우 중앙센터는 2,432백만원(전액 국비지원)을 지원받고, 지방 센터는 지자체 부담(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다(보건복지부, 2023: 480).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이 있다.

〈표 IV-2-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보건복지부 2023년 보육사업 안내)

구분		시·도	시·군·구
계	129	18	110
중앙	1	-	-
서울	26	1	25
부산	10	1	9
대구	3	1	2
인천	7	1	6
광주	3	1	2
대전	3	1	2
울산	6	1	5
세종	1	1	-
경기	32	2	30
강원	4	1	3
충북	6	1	5
충남	4	1	3
전북	5	1	4
전남	4	1	3
경북	6	1	5
경남	6	1	5
제주	2	1	1

주: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79.

7)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조사 및 점검 업무를 진행하는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은 부모 모니터링(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를 공통 사항으로 한다.

[그림 IV-2-4]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한국보육진흥원, 2023)



주: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61.

8) 보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자문 및 교육을 진행하는 보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원은 보육정책위원회, 보육교사교육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급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을 공통 사항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지휘·감독(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한다.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지도·감독, 보육교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지자체 사례조사

가. 보육업무 분석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의 보육업무 부서 담당자 대상 업무조사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작성된 세부업무를 8개의 영역에 포함하여, 보육업무 영역별 업무 수 및 비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서울시청 및 서울 지역 구청

서울시 구청 수준에서 보육업무를 살펴본 결과, 전체 1,276개 가운데 강동구가 116개의 세부 업무로 가장 많은 업무량을 나타냈으나, 평균적으로 55개의 세부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시청 및 시·군·구청의 현원과 비교하여 인원당 업무 수로 환산해보면, 1인당 평균 2.6개의 세부업무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시청에는 31명의 현원이 있고, 1인당 3.5개의 세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청별로 현원과 세부업무 수에 차이가 있는데, 종로구(6.5개), 강동구(5.8개), 성북구(5.0개)에서 높은 인원당 세부업무 수가 도출되었다.

보육업무 영역별로 구분한 결과, ‘사업 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순으로 대체적으로 업무 수가 높게 나타난다. 현장과 연계된 복지업무 특성상, 사업 운영과 지원의 성격이 강하고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이 많은 결과가 반영된다. 반대로, ‘종합지원센터’와 ‘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관련 세부 업무 수는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복지업무 구조상 외부 위탁된 사무(교육원)가 있고 행정 및 실무 업무의 지원 기구(종합지원센터)가 있는 현 체계의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업무 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서울 시·군·구에서 많은 업무 수와 함께 높은 업무 비중을 나타내는 업무영역이 공통된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를 통해,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시·군·구에서 ‘사업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안전 및 지도점검’의 세부업무 비중이 공통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업무 수가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개별 업무 수행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해당 업무영역이 보육업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을 여지가 있다.

특히 ‘안전 및 지도점검’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세부업무 수가 낮으나 업무 비중이 높게 나타나(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용산구에서는 다른 영역보다 높음), 질적인 업무 강도가 높은 영역이라 유추할 수 있다.

〈표 IV-3-1〉 서울시 보육업무 분석: 영역별 업무 수 및 비중

단위: 명, 개(%)

서울	현원	보육업무 수	정책개발 기본계획	사업 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지역특화 사업	거버넌스 및 시스템	종합지원 센터	안전 및 지도점검	정책 위원회 및 교육원
시청	31 (3.5)	109	10 (6.47)	41 (42.64)	23 (24.38)	5 (5.22)	15 (8.96)	2 (2.99)	9 (8.21)	4 (1.14)
강남구	23 (2.2)	50	5 (10.69)	15 (35.11)	17 (29.01)	3 (3.05)	1 (1.53)	0 (0.00)	8 (17.56)	1 (3.05)
강동구	20 (5.8)	116	22 (16.35)	29 (25.26)	27 (27.84)	6 (3.34)	14 (7.48)	4 (4.81)	12 (14.25)	2 (0.67)
강북구	23 (2.0)	45	3 (6.34)	16 (44.88)	9 (19.02)	3 (4.39)	4 (4.39)	1 (4.88)	8 (14.15)	1 (1.95)
강서구	16 (3.8)	61	4 (6.12)	21 (28.06)	18 (33.81)	5 (7.91)	5 (7.19)	1 (2.88)	5 (11.15)	2 (2.88)
관악구	25 (2.1)	53	2 (3.32)	22 (41.91)	17 (36.51)	3 (5.81)	4 (4.15)	0 (0.00)	4 (5.81)	1 (2.49)
금천구	23 (2.0)	47	4 (9.47)	12 (21.05)	14 (29.47)	4 (5.26)	3 (5.26)	1 (5.26)	8 (22.11)	1 (2.11)
노원구	26 (2.5)	64	2 (6.84)	19 (30.42)	16 (23.19)	5 (6.46)	9 (12.55)	1 (1.90)	11 (17.11)	1 (1.52)
도봉구	25 (2.5)	62	9 (13.37)	22 (39.04)	9 (18.18)	2 (1.07)	7 (4.28)	2 (6.42)	10 (17.11)	1 (0.53)
동대문구	14 (2.8)	39	2 (3.83)	18 (50.72)	7 (13.88)	2 (3.83)	2 (2.39)	1 (4.31)	5 (14.35)	2 (6.70)
동작구	21 (2.9)	61	4 (6.67)	23 (47.08)	17 (24.17)	1 (2.08)	6 (6.25)	3 (5.42)	6 (7.08)	1 (1.25)
마포구	24 (2.5)	59	6 (11.42)	23 (47.03)	15 (21.00)	2 (1.83)	6 (5.94)	0 (0.00)	5 (8.68)	2 (4.11)
서대문구	10 (2.8)	28	0 (0.00)	14 (47.87)	3 (9.57)	1 (3.19)	0 (0.00)	1 (5.32)	8 (31.91)	1 (2.13)
서초구	35 (1.4)	50	3 (2.37)	21 (42.31)	10 (17.16)	6 (13.61)	3 (3.25)	0 (0.00)	6 (18.34)	1 (2.96)
성동구	17 (2.5)	43	1 (1.10)	20 (51.65)	6 (15.38)	4 (7.69)	5 (7.69)	1 (4.40)	5 (9.89)	1 (2.20)
성북구	10 (5.0)	50	3 (10.94)	16 (35.42)	17 (28.85)	2 (6.77)	5 (6.04)	1 (3.13)	5 (7.81)	1 (1.04)
송파구	17 (3.7)	63	4 (7.36)	29 (45.09)	8 (12.88)	3 (4.29)	6 (6.75)	0 (0.00)	13 (23.62)	0 (0.00)

서울	현원	보육업무 수	정책개발 기본계획	사업 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지역특화 사업	거버넌스 및 시스템	종합지원 센터	안전 및 지도점검	정책 위원회 및 교육원
양천구	17 (2.9)	49	3 (7.43)	20 (45.65)	9 (20.17)	1 (1.06)	5 (3.18)	1 (3.72)	10 (18.79)	0 (0.00)
영등포구	22 (3.6)	79	3 (4.58)	40 (43.51)	20 (24.05)	3 (4.96)	1 (2.29)	1 (2.29)	11 (18.32)	0 (0.00)
용산구	21 (1.4)	30	0 (0.00)	14 (45.26)	5 (14.60)	1 (2.92)	2 (6.57)	1 (3.65)	6 (21.17)	1 (5.84)
은평구	24 (3.8)	90	3 (2.13)	40 (53.30)	9 (8.53)	5 (4.69)	9 (6.82)	7 (5.97)	15 (15.99)	2 (2.56)
종로구	8 (6.5)	52	3 (5.56)	19 (33.33)	7 (7.14)	1 (4.76)	3 (3.17)	1 (3.17)	17 (41.27)	1 (1.59)
중구	28 (1.1)	30	1 (2.80)	15 (53.85)	5 (18.18)	1 (2.80)	2 (4.90)	1 (4.20)	4 (10.49)	1 (2.80)
중랑구	19 (2.9)	55	2 (1.63)	22 (53.80)	13 (17.93)	0 (0.00)	5 (2.72)	1 (4.35)	11 (17.39)	1 (2.17)
합계	499 (2.6)	1,276								

주: 1) 영역별 업무 수와 해당 업무 비중은 작성자 업무조사지 근거. 다만, 세부 업무 중 총괄(팀장), 서무, 의회 대응, 기타 업무는 제외

2) 괄호의 비중은 세부업무별 작성된 비중의 영역별 총합

3) 음영 진하기는 구청별 상위 3개 업무영역 순

2) 전라남도 도청 및 시·군·구청

전라남도 도청의 보육업무는 총 33개로 나타났고, 기관의 역할로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업무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전라남도의 시·군·구청의 보육업무는 서울(1,276개)과 비교했을 때 총 357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세부업무를 보였다.

다만, 이를 시청 및 시·군·구청의 현원과 비교하여 인원당 세부업무 수로 환산해 보면, 1인당 평균 4.5개의 다소 높은 세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청에서는 4명의 현원이 1인당 8.3개의 세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청별로는 곡성(11개), 장흥(11개)에서 가장 높은 세부업무 수가, 반면에 나주(3.0개), 순천(2.6개)에서 낮은 세부업무수가 도출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도가 낮은 결과이다. 시·군·구 수준에서 업무의 수가 영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편인데, 특히, ‘사업 운영 및 지원’과 ‘교육 및 예결산’의 업무에 대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거버넌스 및 시스템’ 관련 세부업무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에 작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보육서비

스의 대상과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시·군·구의 업무영역별 세부업무 수와 업무 비중을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안전 및 지도점검’의 세부업무의 수가 높았다. 특히, 업무 비중 측면에서는 ‘안전 및 지도점검’ 영역의 세부업무 들의 강도가 높게 보여 진다.

〈표 IV-3-2〉 전라남도 보육업무 분석: 영역별 업무 수 및 비중

단위: 명, 개(%)

전남	현원	보육업무 수	정책개발 기본계획	사업 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지역특화 사업	거버넌스 및 시스템	종합지원 센터	안전 및 지도점검	정책위원 회 및 교육원
도청	4 (8.3)	33	7 (38.70)	6 (21.56)	5 (14.29)	1 (0.26)	4 (3.90)	2 (1.82)	6 (9.09)	2 (10.39)
고흥	3 (6.3)	19	2 (14.29)	4 (20.41)	4 (16.33)	3 (18.37)	0 (0.00)	1 (16.33)	2 (4.08)	3 (10.20)
곡성	1 (11.0)	11	1 (5.00)	4 (25.00)	3 (35.00)	0 (0.00)	1 (10.00)	0 (0.00)	2 (25.00)	0 (0.00)
광양	5 (4.6)	23	3 (14.43)	9 (36.08)	4 (22.68)	1 (2.06)	0 (0.00)	0 (0.00)	5 (18.56)	1 (6.19)
구례	3 (3.7)	11	2 (36.67)	2 (6.67)	3 (30.00)	0 (0.00)	0 (0.00)	0 (0.00)	3 (20.00)	1 (6.67)
나주	4 (3.0)	12	1 (12.50)	2 (17.50)	2 (25.00)	2 (10.00)	0 (0.00)	0 (0.00)	5 (35.00)	0 (0.00)
담양	2 (4.5)	9	3 (40.00)	2 (20.00)	2 (20.00)	0 (0.00)	0 (0.00)	0 (0.00)	2 (20.00)	0 (0.00)
목포	6 (5.7)	34	2 (5.56)	9 (20.37)	5 (12.96)	4 (5.56)	0 (0.00)	1 (2.95)	11 (48.15)	2 (7.41)
무안	2 (6.5)	13	3 (42.31)	3 (14.10)	3 (17.95)	0 (0.00)	0 (0.00)	0 (0.00)	3 (12.82)	1 (12.82)
보성	1 (8.0)	8	0 (0.00)	3 (50.00)	1 (12.50)	1 (12.50)	0 (0.00)	0 (0.00)	2 (25.00)	1 (12.50)
순천	17 (2.6)	44	3 (6.88)	16 (45.00)	12 (17.19)	4 (6.88)	0 (0.00)	5 (15.63)	3 (7.50)	1 (0.94)
신안	3 (4.7)	14	4 (52.83)	2 (11.32)	3 (11.32)	0 (0.00)	0 (0.00)	0 (0.00)	3 (15.09)	2 (9.43)
여수	9 (5.0)	45	2 (3.35)	12 (24.58)	20 (45.25)	3 (7.26)	2 (2.23)	2 (5.59)	3 (10.61)	1 (1.12)
영광	4 (5.3)	21	1 (2.50)	7 (22.50)	6 (32.50)	2 (15.00)	0 (0.00)	0 (0.00)	4 (22.50)	1 (5.00)
영암	2 (5.5)	11	1 (10.00)	2 (10.00)	5 (60.00)	0 (0.00)	0 (0.00)	0 (0.00)	3 (20.00)	0 (0.00)

전남	현원	보육업무 수	정책개발 기본계획	사업 운영 및 지원	교육 및 예결산	지역특화 사업	거버넌스 및 시스템	종합지원 센터	안전 및 지도점검	정책위원 회 및 교육원
완도	2 (4.0)	8	1 (35.00)	1 (5.00)	3 (30.00)	0 (0.00)	0 (0.00)	0 (0.00)	2 (25.00)	1 (5.00)
장성	1 (8.0)	8	0 (0.00)	3 (50.00)	1 (11.11)	1 (5.56)	0 (0.00)	0 (0.00)	2 (27.78)	1 (5.56)
장흥	1 (11.0)	11	0 (0.00)	2 (15.79)	6 (63.16)	0 (0.00)	0 (0.00)	0 (0.00)	3 (21.05)	0 (0.00)
진도	2 (6.0)	12	3 (42.86)	2 (19.05)	2 (9.52)	0 (0.00)	0 (0.00)	0 (0.00)	2 (9.52)	3 (19.05)
함평	1 (6.0)	6	0 (0.00)	0 (0.00)	3 (60.00)	0 (0.00)	0 (0.00)	0 (0.00)	2 (35.00)	1 (5.00)
해남	3 (8.3)	25	3 (24.56)	9 (24.56)	7 (22.81)	0 (0.00)	1 (1.75)	1 (7.02)	4 (19.30)	0 (0.00)
화순	3 (4.0)	12	2 (13.33)	5 (51.67)	4 (25.00)	1 (10.00)	0 (0.00)	0 (0.00)	0 (0.00)	0 (0.00)
합계	79 (4.5)	357								

주: 1) 영역별 업무 수와 해당 업무 비중은 작성자 업무조사지 근거. 다만, 세부 업무 중 총괄(팀장), 서무, 의회 대응, 기타 업무는 제외

2) 괄호의 비중은 세부업무별 작성된 비중의 영역별 총합

3) 음영 진하기는 시·군·구청별 상위 3개 업무영역 순

3) 보육업무 종합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의 보육업무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 및 지원'과 '교육 및 예결산', 안전 및 지도점검'의 세부업무 수 및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과 연계하여, 복지업무에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과 사업 및 지원 특성을 파악하였다. 복지업무 가운데 현 체계 내 위탁 및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종합지원센터, 교육원, 시스템).

나. 담당인력 분석

17개 시·도청 보육담당 부서 인력 조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서 규모(부서 명 및 구성, 과/팀, 현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업무 담당 부서의 소속을 살펴보면, 여성과 가족 관련(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도, 전남, 경남) 업무와 혼합되어 있거나, 단일 복지(대전, 세종, 강원도, 충북, 충남, 제주) 업무로 초점화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세부 팀명을 통해 업무 구성을 유추하면, 서울, 경기도를 제외하고, 울산(출산보육팀), 경북(돌봄보육팀)이 팀 내 보육업무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서 규모의 경우 서울(1담당 6팀)과 경기(1과 5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현원을 갖고 있다. 또한, 부산과 인천이 동일한 계 보육업무 3팀과 각각 15명, 26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업무 범위 및 업무량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시·도청 보육업무 담당 직제

시·도	실·국명	직제	과/팀명	현원
서울	여성가족정책실	1담당 6팀	영유아담당관, 영유아정책팀, 영유아지원팀, 영유아기반팀, 보육사업팀, 특화보육팀, 보육관리팀	31
부산	여성가족국	3팀	보육행정팀, 보육평가팀, 보육지원팀	15
대구	청년여성교육국	2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8
인천	여성가족국	3팀	영유아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26
광주	여성가족교육국	1팀	보육팀	8
대전	복지국	2팀	보육지원팀, 보육관리팀	9
울산	복지여성국	1팀	출산보육팀	6
세종	보건복지국	2팀	보육기획팀, 보육지원팀	9
경기	여성가족국	1과5팀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기반팀, 보육컨설팅팀, 보육품질관리팀	26
강원	복지국	1팀	보육지원팀	4
충북	보건복지국	1팀	보육지원팀	4
충남	복지보건국	1팀	보육지원팀	5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1팀	보육정책팀	5
전남	여성가족정책관실	1팀	보육지원팀	3
경북	여성아동정책관실	1팀	돌봄보육팀	5
경남	여성가족국	1팀	보육담당팀	6
제주	복지가족국	1팀	보육정책팀	3

자료: 각 시도청 홈페이지 조직도를 인출(2023. 4. 기준)하여 연구진이 작성함.

다. 보육업무와 유아교육 업무 비교 통합(안)

앞서 보육업무 분석의 결과, 시·도청 및 시·군·구청의 업무 및 인력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아교육과의 공통 업무영역 안에서 이관 및 통합 필요 세부업무를 살펴본다.

〈표 IV-3-4〉 이관대상 영유아 보육업무 판단 기준

기준	설명	요인
유사성	- 보육 업무 통합적 서비스 제공 정도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구조 및 협력, 지역사회 관리	업무 중복성 등
효율성	- 보육 업무 서비스 제공과정의 비용 대비 산출도 -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조직 내 인력, 업무분장, 업무 부담 등	업무 단위별 담당 인력, 소요 예산 등
적절성	- 적절한 보육업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	업무 단위별 지원되는 과정, 단계별 조직의 역할 등
전문성	-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구조(교육)와 전문성 중심 분석	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등

유사성이란 유아교육·보육 중복/공통업무로서 단기간에 이관이 가능해 보이는 업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효율성-적절성-전문성 순서로 유아교육·보육 업무 각각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단기간 이관이 어려움을 뜻한다.

이를 통해 (1) 유사성/공통성이 강한 업무는 추가인력이 없이 바로 이관이 가능한 업무로 볼 수 있으며(유아교육·보육 공통업무), (2) 유사성/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적절성, 전문성 측면에서 추가인력과 업무이행/숙련기간이 필요해 보이는 업무(필수이관 업무), (3) 전문성, 차별성(비유사성)으로 인하여 유보통합모델이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이관 업무는 어렵고, 별도의 인력배치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이관이 필요한 업무(고유업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은 유아교육·보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유아교육·보육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 이관 시 인수인계

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기간에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표 IV-3-5〉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유아교육계획 기획·제작·보급,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유치원 장학계획 수립 및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수립,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제작·보급,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유아 사교육 경감 관련 업무,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목표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법령, 조례, 규칙관련 업무, 자치구 인센티브 및 정부합동 평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시·도 및 자치구 평가, 영유아 보육정책 관련 연구용역 총괄 누리과정업무 등	○	○	○	△	단기 통합 가능 (1)

2) 사업 및 운영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확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종료 및 행정소송 업무, 컨설팅 및 평가, 직장어린이집 등은 보육에 대한 고유 업무로 필수 이관 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세부업무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전달체계나 전문성 부문에서 단기간 이관 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업무를 지원할 추가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표 IV-3-6〉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사업 및 운영 지원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유치원 평가 지원, 유아교육 실태조사 연구 용역 사업 운영 현안 중심 컨설팅 운영, 유치원 수업지원 사업,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 유아 관찰·평가 업무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준 및 제도 개선, 어린이집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및 제도개선, 어린이집 맞춤형 컨설팅 추진,	○	△	△	△	장기 통합/ 추가 인력 배치 (3)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맞춤형컨설팅 장학 운영, 수업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 유·보 이음교육 운영 업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업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지도·점검·연수,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업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종료 및 행정소송 업무, 방과후 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관련사항					

3) 교육 및 사업 예결산

교육 및 사업 예결산은 크게 교직원 인사관리와 재정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건비 지원 및 정산,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예산업무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더라도 예결산 업무를 진행했던 공무원이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간에 업무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표 IV-3-7〉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교육 및 사업 예결산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유치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 수립·모니터링, 정·현원 관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교구 기준 조정 관리,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편람 제작,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지칭 수립 및 관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용 실태 점검 및 관리,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계획 및 운영,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정산 영유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지원 및 정산, 어린이집급식(급식재료 공동구매)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지원 및 정산, 보육교직원권익보호증 진사업	○	○	○	○	단기 통합 가능 (1)

4) 지역 특화 사업

지역 특화 사업은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한 사업을 의미하는데, 큰 틀에서는 보육사업의 하나로 업무의 성격은 유사하나, 대민서비스라는 점과 지역별 특수

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업무 이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 이관 시에는 해당 예산과 추가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3-8〉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지역특화사업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없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래너 사업, AI 활용보육 등 특화보육 개발, 혁신육아복합센터	○	△	△	△	추가 인력 배치 (2)

5) 거버넌스 및 시스템

유아교육·보육 관련 단체와 부모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와 통계 시스템 등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기간에 업무를 이관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표 IV-3-9〉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거버넌스 및 시스템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유치원 관리자 회의, 유아교육전문직 워크숍 기획·추진, 유아교육 단체 관련, 교직원 체업무, 사립유치원 단체 관련 업무, 유·보 통합 관련 업무,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및 결산 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데이터 구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용 실태 점검 및 관리 등	보육관련법인·단체관리, 교사 및 부모네트워크 보육 거버넌스 운영, 국공립확충 사업 관련 통계관리 및 통계시스템 구축, 영유아 발달 실태조사, 보육교사 교육원 시스템 관리 등	○	○	○	△	단기 통합 가능 (1)

6) 지원조직

업무 성격 보다 조직 체계 혹은 수행 주체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직 자체가 업무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이러한 조직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필수적으로 이관 혹은 연계되어 세부적인 업무가 계획·진행될 필

요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기능으로는 각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업무가 유사하나 조직과 인력의 법적 성격이 달라 통합이 어렵다면, 우선은 시도교육청에서 계속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업무(사업)를 위탁하는 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IV-3-10〉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지원조직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유아교육진흥원 업무 관련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	○	○	단기 통합 가능 (1)

7) 안전 및 지도점검

안전 및 지도점검의 세부업무 성격은 유아교육과 보육 간에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국공립 및 방과후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업무, 가정, 직장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는 유아교육 업무 가운데 유사한 업무가 없어 보육업무의 고유한 업무로 볼 수 있다. 이에 특별히 업무 난이도, 복잡도로 인한 수행 어려움 보다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 수가 많아 난관이 예측될 수 있다.²⁹⁾

〈표 IV-3-11〉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안전 및 지도점검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유치원 환경(공간) 관련 업무, 유치원 생활지도, 유치원 안전교육 관련 업무, 유아 건강교육 관련 업무, 유아 성교육 내실화 방안 관련 업무,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업무, 교직원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조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등	보육교사교육기관관리및지도점검, 어린이집현장점검, 어린이집원장및점검공무원교육,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운영및개선, 보건복지부어린이집점검관련총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통학버스관리 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 어린이집실내공기질 관리 등	○	△	△	△	장기 통합/추가 인력 배치 (3)

29) [부록 2] 17개 시도별 영유아 및 유아교육·보육 업무 조직 현황 자료 참고.

8) 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위원회는 각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이를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표 IV-3-12〉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비교(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부문)

교육청 업무 예시	지자체 업무 예시	업무 이관 기준				비고
		유사성	효율성	적절성	전문성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의회 등 주요업무보고	보육정책위원회운영 및 지원, 의회 등 주요업무보고,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관리	○	○	○	○	단기 통합 가능 (1)

라. 시·도와 시·군·구 업무 분석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하여야 하며(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국가가 이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1조 제2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조지고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보육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시도 사무와 시·군·구 자치사무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사항이 없으므로 결국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무를 나누게 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3-13〉 영유아보육법상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사무

근거규정	광역지자체 사무(시·도 사무)	기초지자체 사무(시·군·구 사무) ³⁰⁾
제6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제11조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제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노력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노력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제13조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변경 인가
제15조의5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 조사·점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 조사·점검
제19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관리
제26조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제26조의2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
제26조의2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제34조	무상보육 실시	무상보육 실시
제34조의2	양육수당	양육수당
제36조	비용의 보조 ³¹⁾	비용의 보조
제39조의2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공유재산의 대부
제4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의2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제41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도·명령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도·명령
제43조의2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제44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제45조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폐쇄
제45조의2	과징금 처분	과징금 처분
제49조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제49조의3	법 위반사실의 공표	법 위반사실의 공표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사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30) 일부 업무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

31)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표 IV-3-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기관위임사무

근거규정	사도지사 사무(기관위임사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무(기관위임사무)
제26조 제1항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제26조 제1항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제26조 제1항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제26조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제26조 제2항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제26조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다만,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사무는 광역단위(시·도교육청)에만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교육자치법 제3조), 지자체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자치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선 일괄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한 이후, 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면 될 것이다(교육자치법 제26조). 일반적으로 교육장은 공사립유치원 등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와 각 지역별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조례³²⁾를 살펴보면,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평가, 징계 등 인사관리 사무와 관내 유치원 등 각종 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정직, 해고, 전보, 유치원 등 각종학교의 국유재산 및 자치단체재산 사용허가,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지 및 지도·감독, 유치원 등 각종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육업무와 관련해서도 보육교직원 임면과 경력사항 관리,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관리, 어린이집 휴원명령,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어린이집 지도·감독, 어린이집 설치·변경사항 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32)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지역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95](https://law.go.kr/lumThdCmpJo.do?lsiSeq=241907&joNo=0035&joBrNo=00&datClsCd=010103&dguBun=&lsId=000898&chrClsCd=010202&gubun=STD&lnkText=%25EC%25A1%25B0%25EB%25A1%2580%25EB%25A1%259C(2023. 6. 15. 인출) 참조.</p>
</div>
<div data-bbox=)

V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 01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 02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제외하는 경우
- 03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V.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1.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로드맵

유아교육·보육 업무 일원화는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우선 1단계(과도기)는 先 중앙단위 통합, 後 지방단위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정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중앙단위에 한하여 先 통합(교육부로 관리체계 일원화) 후, 일정 간격을 두고 지방단위 통합(시·도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육업무는 계속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서 관할하므로, 「정부조직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2단계(중앙 및 지방 일원화)는 교육부 관리체계 하에 기존 시·도 및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보육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다. 즉, 유아교육·보육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통합모델이 마련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의 성격은 “사회복지시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므로, 2단계까지는 각 기관의 법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지방단위까지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교육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 V-1-1〉 관리체계 추진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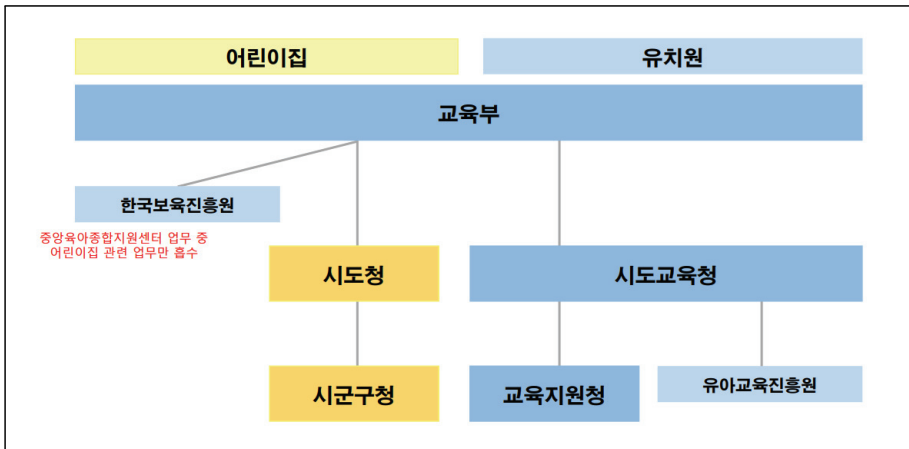


마지막 3단계(통합모델 마련)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때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폐지하고 통합법률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등 유관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2.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제외하는 경우

가. 1단계 추진 방향

[그림 V-2-1] 1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제외)



1) 중앙단위

가) 중앙 부처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제외하고 교육부로 업무 및 인력을 이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육아종합지원본부(중양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중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흡수하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업무 중 어린이집 지원 관련 업무 및 인력을 흡수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보육 업무 중 유치원·어린이집 업무는 유사성을 갖는 반면, 가정양육지원 기능은 보건복지부의 고유업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육 업무 중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지원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업무보다

는 어린이집 업무부터 유치원 업무와 통합하여 시행한다.

나) 지원 조직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로 이관하되, 2단계 지방단위 통합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린이집 업무를 지원하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기능을 이관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지원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로 이관하거나 복지부 존치를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교육부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한국보육진흥원 내부조직(중앙육아종합지원본부) 형태로 함께 이관하여 통합하고, 가정양육 지원 기능은 보건복지부 업무로 이동한다. 이후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중 한 곳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13. 12. 5부터 가정양육 지원 기능까지 확대)³³⁾

(어린이집 지원)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가정양육 지원) 부모교육 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시간제보육 등

⇒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존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업무 지원 기능은 한국보육진흥원 내부 업무로 흡수·이관하고, 가정양육 지원 기능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지방 단위

가) 시·도 및 시·군·구

광역단위의 경우 시·도청에서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되, 시·도교육청과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에 불과하고, 교육장도 임명직이기 때문에 업무이관 협의를 할 권한이 없다. 따

3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설립목적과 연혁, 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2.jsp(2023. 6. 10. 인출) 참조.

라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별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업무 및 조직 이관 협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시·도지사와 공유하여, 실질적으로는 각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지원 조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시·도에서 위탁을 받아 계속해서 수행하되, 점차 기능을 축소하고,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 시·도 유아교육진흥원과 같은 업무를 이관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3) 개정 필요 법률

중앙단위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안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V-2-1〉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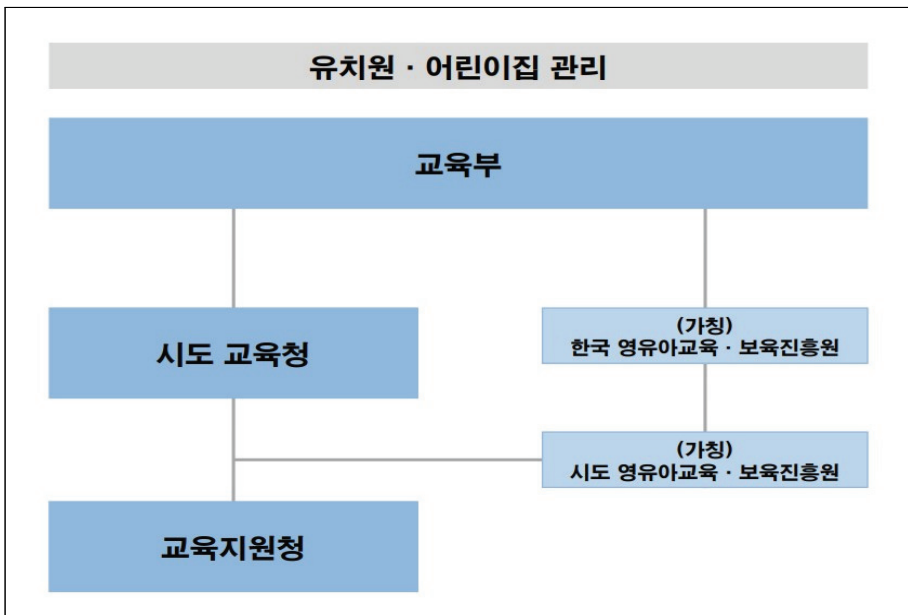
영유아보육법 현행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u>보건복지부장관</u>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교육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업무 이관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내에 규정한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내용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존치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소관 법률이 될 것이다. 다만,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많지 않다면, 해당 내용을 아동복지법 내지 아동수당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2단계 추진 방향

[그림 V-2-2] 2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제외)



1) 중앙단위

가) 중앙부처

교육부는 계속해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나) 지원조직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은 일부 기능을 통합한 후 교육부 산하기관으로서 “(가칭)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출범한다. 주요업무는

교사 연수 진행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 평가 지원, (가칭) 시·도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 관리 및 지원이다. 업무통합에 따라 기존에 영유아교육연수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교육부)을 해당 기관으로 파견하고, 기존 한국보육진흥원 인력을 통합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을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두어 기존의 민간 인력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2) 지방단위

가) 지방 조직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지원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도교육감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해당 업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한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업무의 경우 인력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업무의 성격은 다르지만, 필수적으로 이관해야 하는 업무를 일원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고유업무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거나 계속해서 시·군·구에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표 V-2-2〉 지방단위 업무 이관 방안(가정양육 지원 제외)

(업무이관 1단계) 공통업무: 인력 이동과 관계없이 업무를 인계받아 교육청에서 업무 수행 -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 사업 예결산 - 교육과정 - 교직원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관련) 업무 - 어린이집 관련 거버넌스 운영(유관단체)
↓
(업무이관 2단계) 필수이관 업무: 공통업무는 아니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통합이 필요하며, 기존 보육업무 인력의 파견이나 지원형태로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 - 사업 및 운영 지원: 민·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지원 - 어린이집 설치·인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설치인가, 민·가정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관리 - 시간제보육/취약보육 - 어린이집 의무평가/사후방문지원, 보육과정 등 컨설팅
↓



(업무이관 3단계) 어린이집 고유업무: 기존 유치원 업무와의 유사성, 적절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 반드시 함께 이관되거나 계속해서 기초지자체에 남겨둘 필요가 있는 업무

- 지역형 어린이집 공인취소·종료 및 행정소송
- 어린이집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나) 지원 조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고, 시·도교육청 소속의 산하기관으로 “(가칭) 시·도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을 둔다. (가칭) 시·도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은 중앙((가칭)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기관의 일부 업무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대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기타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한다.

통합된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은 기존의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인력이 해당 기관에 파견하는 형태로 업무를 지원하고, 기존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흡수하여 업무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양육 지원 기능이 이전되지 않을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자체에 존치할 가능성이 큰데, 어린이집 지원 업무 역시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해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지원업무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교육지원청(176개)이 시·군·구청(226개)에 비하여 광역화되어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업무 자체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관이므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 어린이집 지원 관련 사업을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3) 개정 필요 법률

1단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소관 업무를 “시·도교육감”으로 개정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외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과 업무를 개정하고, (가칭)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과

시·도 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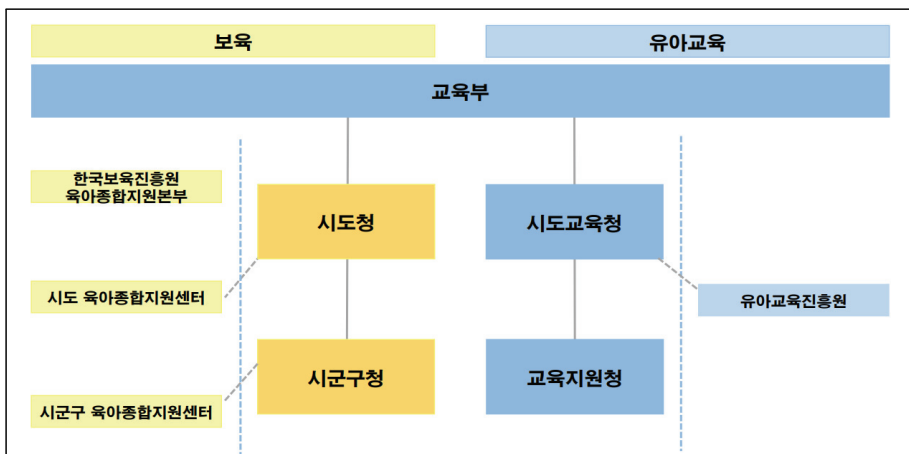
교육자치법의 경우 제20조에 따른 시·도교육감의 관장사무를 개정하여 어린이집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도 어린이집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교육기본법 제11조 등에 학교, 평생교육시설 외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법체계상 시·도교육감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각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설치·인가 업무를 시·도교육감 소관업무로 이관하는 경우 이를 개정하여 시·도교육감이 직접 업무를 수행 또는 교육장에 위임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이관 대상에 가정양육 지원을 포함하는 경우

가. 1단계 추진 방향

[그림 V-3-1] 1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포함)



1) 중앙단위

가) 중앙부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업무 중 보육 업무 및 해당 인력을 흡수한다.

나) 지원 조직

한국보육진흥원은 교육부로 이관하되, 지방단위 통합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육 업무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기능을 이관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부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이 한국보육진흥원의 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한다.

2) 지방단위

가) 시·도 및 시·군·구

1단계 통합 시에는 시·도청에서 보육 업무를 담당하되, 시·도교육청과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여 2단계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에서의 보육업무 및 조직 관련 이관 협의는 지역별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정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과 보육업무 및 조직 이관 협의를 할 때 기초자치단체의 것까지 포함해서 협의하도록 한다.

나) 지원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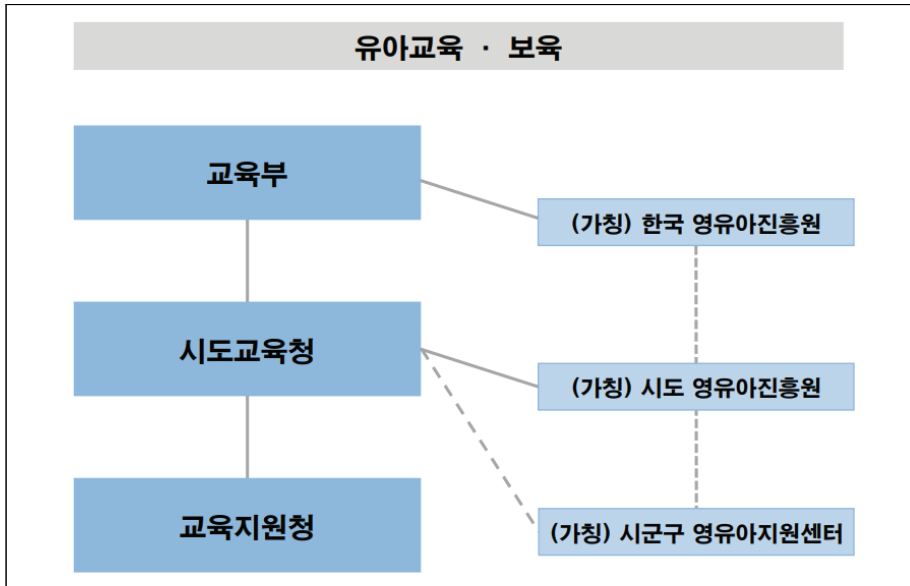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 사업은 계속해서 수행하되,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업무 이관을 협의한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계속해서 보육사업을 수행한다.

3) 개정 필요 법률

중앙단위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하며, 영유아보육법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2단계 추진 방향

[그림 V-3-2] 2단계 시, 관리체계(가정양육 지원 포함)



1) 중앙단위

가) 중앙부처

교육부는 유아교육·보육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보육업무의 경우 “가정양육지원” 기능이라는 다소 생소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보육업무 전체가 이관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 이관과 인력은 단계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표 V-3-1> 지방단위 업무 이관 방안(가정양육 지원 포함)

- (업무이관 1단계)** 공통업무: 인력 이동과 관계없이 업무를 인계받아 교육청에서 업무 수행
-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 사업 예결산/ 보육료 지원/가정양육수당 지원
 - 교육과정
 - 교직원 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관련) 업무
 - 어린이집 관련 거버넌스 운영(유관단체)



(업무이관 2단계) 필수이관 업무: 공통업무는 아니나 질 향상을 위해 업무통합이 필요하며, 기존 보육업무 인력의 파견이나 지원형태로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

- 사업 및 운영 지원: 민·가정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지원
- 어린이집 설치·인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설치인가, 민·가정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관리
- 시간제보육/취약보육
- 어린이집 의무평가/사후방문지원, 보육과정 등 컨설팅



(업무이관 3단계) 어린이집 고유업무: 기존 유치원 업무와의 유사성, 적절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인력이 반드시 함께 이관되거나 계속해서 기초지자체에 남겨둘 필요가 있는 업무

- 지역형 어린이집 공인취소·종료 및 행정소송
- 어린이집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 부모교육, 지역사회 영유아 프로그램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

나) 지원조직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부 산하에 두고 “(가칭) 한국영유아진흥원”으로 출범한다. 주요 업무는 교사 연수 진행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 평가 지원, 시·도 영유아교육진흥원 관리 및 지원, 가정양육 지원 사업이다. 업무통합에 따라 기존에 영유아교육연수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교육부)을 해당 기관으로 파견하고, 기존 한국보육진흥원 인력을 통합하거나, 혹은 해당 기관을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두어 기존의 민간 인력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방단위

가) 지방 조직

시·도청 및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던 보육 업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나) 지원조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유아교육진흥원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청 산하의 “(가칭) 시·도 영유아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주요 업무는 중앙((가칭) 한국영유

아진흥원) 일부 업무 지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대상 체험프로그램 제공, 기타 지역 특수사업 수행이다. 통합된 한국영유아진흥원은 기존의 유아교육진흥원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인력이 해당 기관에 파견하는 형태로 업무를 지원하고, 기존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흡수하여 업무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시·도 교육청 혹은 교육지원청 산하의 “(가칭) 시·군·구 영유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인 가정양육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시설과 인력에 대한 재산 및 고용승계 문제³⁴⁾, 대민 서비스 문제(지역 광역화) 등으로 기존 시·군·구(기초단위)에서 교육청(광역단위)으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유아교육·보육 업무의 중앙-시·도 연계와 기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업무 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중앙에서 기초단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예컨대, 동작구의 경우 직접채용 방식으로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통합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ccic.go.kr/html/sub/index.php?pno=030101>(2023. 6. 15. 인출) 참조.



참고문헌

- OECD(2015).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Paris
- OECD(2021). Starting Strong VI: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arting Strong. OECD Publishing, Paris.
- 관계부처합동(2023. 4).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 교육부·보건복지부(2023. 1. 30). 유보통합 추진 방안.
- 금창호·유은정(2010).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확대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2010(0).
- 김민희·주효진·주동범·오세희(2018). 유보통합 및 초·중등사무 지방이양과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2(1).
- 김진·김성주(2022).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나민주·고전·김성기·차성현·이수경(2018).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문무경·김아름·김용·김영민(2022).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행정 조직과 기능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22. 1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 보건복지부(2023). 보육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 윤서연·윤희림(2021). 서울시·교육청·지역사회 역할 분담으로 학교시설 사회적 활용 전환점 마련해야. 서울연구원.
- 지방행정실 선거의회과(2015). 국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 사무구분 기준 및 사례.
- 최윤경(2017).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자료. 제3차 KEDI 미래교육정책포럼(2017. 7. 14). 한국교육개발원.
- 최윤경·박창현·하연섭·김희수(2016).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문무경·김은영·최윤경·양미선·강은진·김동훈·김아름·김문정(2022).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행정안전부(2019).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4호).

행정자치부(2015). 사무관리실무.

행정자치부(2015). 서무업무 종합 매뉴얼.

【참고 사이트】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I2에서 2023. 5. 16. 인출.

OECD(2021). Starting Strong VI : Supporting Meaningful Interaction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ecutive Summary <https://www.oecd-ilibrary.org/sites/f47a06ae-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f47a06ae-en>에서 2023. 6. 10. 인출.

UNESCO Education for All, Starting Strong Series IV, V, VI(OECD, 2015, 2017)

교육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담당업무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604&page=0604&s=moe>에서 2023. 4. 25. 인출.

교육부·보건복지부(2023).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49823>에서 2023. 4. 15.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지역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https://law.go.kr/lumThdCmpJo.do?lsiSeq=241907&joNo=0035&joBrNo=00&datClsCd=010103&dguBun=&lsId=000898&chrClsCd=010202&gubun=STD&lnkText=%25EC%25A1%25B0%25EB%25A1%2580%25EB%25A1%259C>에서 2023. 6. 15. 인출.

동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ccic.go.kr/html/sub/index.php?pno=030101>에서 2023. 6. 15. 인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에서 2023. 6. 1. 인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 내용 <https://www.mohw.go.kr/r>

- eact/sg/ssg0101mn.jsp?PAR_MENU_ID=05&MENU_ID=050201에서 2023. 4. 25. 인출.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 인구아동 <https://www.129.go.kr/faq/pfaq03.jsp?n=6415>에서 2023. 6. 1. 인출.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담당업무안내 https://buseo.sen.go.kr/buseo/bu11/user/mngrdept/BD_selectMngrDeptList.do에서 2023. 8. 22. 인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조직도 및 담당업무 <https://org.seoul.go.kr/org/orgChartView.do>에서 2023. 4. 25. 인출.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sia.or.kr/>에서 2023. 4. 25. 인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에서 2023. 4. 15. 인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소개, 주요사업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10000/d1_10004.jsp에서 2023. 4. 25. 인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중앙회 소개, 설립배경 및 목적, <https://www.ssi.f.or.kr/aboutus/establishment>에서 2023. 4. 25. 인출.
- 한국교원대 영유아교육연수원 홈페이지, <https://iece.knue.ac.kr/#>에서 2023. 4. 25.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cpi.or.kr/main.do>에서 2023. 4. 15. 인출.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https://www.kcpi.or.kr/kcpi/business/opcentsuppcentchild.do>에서 2023. 4. 25. 인출.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재단소개, 기관소개, 기관현황 https://www.nrf.re.kr/cms/page/main?menu_no=98에서 2023. 5. 1. 인출.
- 한국일보, 2023.5.25일자 기사, '교육자유특구' 빠지고 '교육-지방자치 통합' 남은 특별법...조희연 "유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515410001552>에서 2023. 6. 2.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에서 2023. 5. 16. 인출.

【참고 법령】

17개 지자체 보육 관련 조례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5호, 2014. 1. 7., 일부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3호, 2023. 4. 18.,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



Abstract

Analysis of Local-Level Operations Related to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System Unification

Ahreum Kim, Yoon Kyung Choi, Hyun-Ki Shim, Yookyeong Park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ims to consolidate the management system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within the education framework,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lifelong, responsibility-based education from the early stages of life. Its objective is to implement a high-quality new educational system tailored to young children, ensuring that educational and care disparities do not occur from the infancy stage.

Currently, daycare center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le kindergarten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t the local level, daycare centers are overseen by cities or provinces(metropolitan self-governing bodies) and cities/counties/districts(basic self-governing bodies), while kindergartens are supervised by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d regional educational support offices. With the integr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scheduled to commence in 2025,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will take the lead in implementing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us, there is a need for an analysis of local-level organizations and task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o prepare for this transition.

This study has conducted an analysi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ask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t has also

presented proposals regarding the transfer of tasks and communication systems resulting from the integr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it has reviewed legislative amendments required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Keyword: integr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ECEC Integration



부록

부록 1. 17개 지자체(시·도청) 보육 업무 8개 영역별 정리

〈부록 표 1〉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목표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지원 업무계획 수립	보육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시책사업 발굴 및 자치구 평가에 관한 사항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업무 전반	보육 시행계획 수립	영유아 보육사업 종합계획
법령, 조례, 규칙 관련업무	업무계획 및 주요 보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누리과정(만3~5세) 운영지원	영유아보육조례 운영 및 법령 총괄 관리	시 자체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국비 제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신규, 재지정) 및 운영	보육사업기획과 소관 사업	어린이집 인가, 폐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영유아담당관리원인사및조직	보육종합대책 총괄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보육법인 관련 법령(조례) 및 제도개선사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및 제도개선 (품질관리)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평가제 지원 및 관리		누리과정 지원	사회복지법인(보육) 설립허가, 정관변경 등
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에 관한사항	교육협력비전 4개년 실행계획 보육분야 추진 관련 사항	사회복지법인(보육) 인가 등 관리·감독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운영 및 제도개선		보육 법인 관련 업무			사회복지법인 지도 감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자치구인센티브 및정부합동평가	구군 보육업무 평가(자체)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지도·점검 종합계획수립	보육행정 평가 관리					보육발전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관련시·도및 지치구평가	보육 조례 및 법령 동향 총괄 관리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교육					
	어린이집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총괄)		혁신육아복합센 터 건립 추진					
영유아보육정책 관련연구영역 총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제고 사항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인 관리					
누리과정업무	어린이집 탄력편성 및 안·퇴소 등에 관한 사항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공모 관련 사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보육관련 주요 시책사업 수립 및 지원	BSC 성과관리	어린이집 평가제 및 컨설팅 지원	중장기 보육계획등 수립	보육사업 종합계획(중장기, 세부) 수립
	보육 조례에 관한 사항		보육관련 조례 제·개정	국정시책 활동평가 관리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도점검 종합계획 수립
	보육분야 비영리법인허가 및 지도감독		사회복지법인(보육 분야) 허가 및 관리	사회복지법인(보육) 설립허가 및 관리			보육정책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업무 지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법인 관련 업무
	보육정책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총괄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관리
	보육지원체계 개편 추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관리

〈부록 표 2〉 사업 및 운영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관한 사항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보육사업안내 지침 운영 총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립어린이집 위탁 및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비 기능보강사업 (중축·개보수)
신청사업 검토, 현장조사, 심의인건 상정 등	부산형 0세 영아전문반 운영에 관한 사항	영아전문, 장애아전문, 아간연장형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운영	민간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표창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취약보육시설 관리	대체교사지원사업	어린이집 이동관리 및 난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운영	어린이집 인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지원(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운영 및 제도개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시립, 빛그린직장, 영린 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연장보육 관련 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및제도 개선 (위탁기준등)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청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어린이집 신축 및 기능보강 등 시설업무 추진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교사대 이동비용개산시범사업총괄	SOC복합화사업 연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	보육고충상담센터 운영	대체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				특수시책 및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사업 추진
서울형0세아전담어린이집사업추진		급식품질 개선 지원사업	장난감마 교재, 교구 순화서비스 지원	가정어린이집 관리				국비 기능보강사업(중축·개보수 외) 총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서울시보육서비스 스지원센터관련 사항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지원	가정육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지범비 시책사업 발굴 및 운영 (지침마련 등)				특수보육어린이 집 지정 및 지원
어린이집설치·인 가예관한사항(국 공립, 민간, 가정 등)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기반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간제보육사업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제도개선	영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사항	직장어린이집	혁신육아복합센 터 건립 추진					민간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그린리모델링사 업및제로에너지 사업관리	취약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설치인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보육교직원 임면·호봉 관리
교사대동비율 개선시범사업모 니터링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	다가치 보육사업 추진					보육교직원 경력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서울아이발달센 터 구축 운영 등 영유아발달 지원사업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운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어린이집맞춤형 컨설팅추진(국공립, 민간, 가정)			특수보육시설 운영					특수보육 관련 업무 -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24시 어린이집, 휴일보육, 방과 후 보육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관리			보조교사 지원사업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결격사유 조회
방과후어린이집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 업무 추진 - 국비 및 도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직장어린이집 관련사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활성화 추진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기타연장형 보육 지원 및 내실화								열린어린이집 지정 관련 업무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휴일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24시간 보육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 위원회 운영
거점형야간보육 활성화								도 자체보육 사업 업무 추진
365영린보육 지정 및 지원								국공립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 및 정산								
영아전담어린이 집지원								
장애통합(전문) 어린이집지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법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도 보육특수시책 지원(차액보육료 등 13개 사업)	국공립확충·어린이 집 기능보강사업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어린이집확충 및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열린어린이집 지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지도(신문고, 학대, 복지부 민원시스템 등)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및 미이행사업장 관리	어린이집 운영 도비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보육) 관리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관련
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사업		안심육아환경조성 사업(장난감, 도서대여 등)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공공형어린이집 업무 추진	365일 열린 어린이집 관리 및 지원
	취약보육 관리(24시간, 장애아)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농림축산식품 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일반		어린이집 운영지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및 관리기관(육아중) 지원
	대체교사 지원 사업(육아중, 시·군)		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지원	취약보육 어린이집 관리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시간제어린이집 운영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관리			
				시간제보육사업 어린이집 지원 선정 및 운영			

〈부록 표 3〉 교육 및 사업 예산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정산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보육교사 양성교육원 운영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아세반 운영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비용 및 보육료 수납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양육수당, 보육료 맞춤형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침 교육
영유아보육료, 냉·난방보육료	어린이집 용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에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누리과정·냉·난방 보육료 지원	보육예산(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등 국비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서울시 교육청 협조 사업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사항(현장학습비, 교재교구비, 동어촌법언어린 이집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보육지원관련 시비특별비 지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지원 및 정산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시립 포함)	누리과정 및 시간제 보육료 예탁		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급식(급식재료공통구매) 지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기관·연장)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양육 수당,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신 지원(대체교사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어린이집 석식 지원 사업	누리과정(운영비 포함) 및 일반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아이행복카드 및 행복e음 관련업무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등 지원			정부지원시설 보조금 정산 출발
공공재난관리(국 공립어린이집시 유지사용)	차액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기능보강비(환경 개선비) 지원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민간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예산(팀) 요청사항(내·외 부) 검토 및 현안업무 처리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중복지급자 로 포함)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 비) 지원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관련 업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영아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5세아 부모부담보육료, 필요경비 지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어린이집 미 이용 가정양육·영아 수당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지원 및 정산(국고보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대전형 시간제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누리과정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교육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지원, 운영지원(보조)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보육교사 처우개선(자체)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육 및 자격관리 에 관한 사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및 지원			보육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의 보호종전 사업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인력 및 운영(서비스업) 지원(13개 사업)			민간·가정·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승인
안심인사 상담실 운영,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보조교사(연장전 담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제교 구비, 차량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서비스 업) 지원(9개 사업)			누리고정 교사수당 및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업무간소화, 어린이집 배상보험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정부지원어 린이집)		방과후전담 어린이집 운영 지원		대체조리원파견, 공공일자리(장애 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련 예·결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보육교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어린이집 교육에 관한 사항			정부 미지원시설 보조금 정산 총괄
보조금 교부, 집행관리, 정산, 근거당첨비 관리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보육교직원 자격 및 관리			기관 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승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교사대야동비용 개선사업보조금 교부·정산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서울형0세아전 담어린이집보조 금교부·정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 지원 등)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관리 및 지원		영유아보육료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관리	누리과정 운영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배치기준 및 복무 관련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영유아, 누리, 부모부담, 시간제, 365일 24시간 보육)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수교육 등 위탁 및 교육기관 운영 지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인건비 지원(국공립 및 취약보육)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관리(국공립 및 취약보육서비스 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영유아, 누리과정, 비장애키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장애아통합어린이 집 치료사 인건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수교육 계획	어린이집 기타종사자 인건비 지원 사업		기관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장애아전문어린이 집 운전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양성교육 관리
	저소득층 보육료 및 운영지원(5개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보육교사교육원 지도감독
				보조·연장교사지원 ·담임교사지원·겸 직원장지원비			담임교사 지원비(교사겸직원 장 포함) 지원
				농촌보육교사특별 수당·처우개선비· 보육도우미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법인이린이 집 지원
				보육료 지원(기본 및 연장보육)(0-2세, 3-5세 누리, 방과후, 차액)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방납방비, 취사원 인건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어린이집 운영 지원(냉난방비,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농어촌법인어린이 집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부록 표 4〉 지역 특화 사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			찾아가는 아이사랑 플레너 사업					
SI 활용교육 등 특화교육 개발			혁신육아복합 센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공교육 이용률 50% 달성							

〈부록 표 5〉 거버넌스 및 시스템

서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보육관련법인·단체관리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 및 관리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지원			어린이집연합회 지원
교사및부모네트워크보육거버넌스운영	어린이집 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부모자조모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민간어린이집(공공형 포함)행사 등에 관한 사항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지원 관련 업무
보육주거간행사(보육의날,보육포럼등)	보육통계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보육통합 및 통계관리	보육통계 및 보육통합시스템 관리		가정어린이집 행사에 관한 사항			
국민육아멘토특강	어린이집 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관리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운영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관리			
어린이집연합회예관한사항	부산시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통계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국공립화추진사업관련통계관리및통계시스템구축					보육정책 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포스트코로나영유아발달실태조사 포함					대전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보육교사교육원 시스템관리								
서울시보육통계 작성및관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육정책 연구개발 및 관리시스템	한미음대회		보육·교육 관련 실무추진협의회(도, 교육청, 도의회)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및 범유반 어린이집 공포 관련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 활성화	어린이집 관련 단체 지원		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및 관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어린이집 연합회 관리 및 지원(행사관련)
			자연놀이터 건립 및 지원	보육통계자료 관리			보육교직원 연수회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등 민간단체 관리				보육교직원 한마음다짐대회 추진

경기	강원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광주	경남
							보육통합관리시스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관리시스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관리시스템
							보육통합관리시스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관리시스템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관리시스템

〈부록 표 6〉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서울시·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운영 지원 관련 업무
서울시장난도 서관개선포인트 운영	구 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터 설치에 관한 사항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재능기부·지역연 계형어린이집업 무	우리아이 보육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육아복합센터 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지원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시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충남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지원, 신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관리
							거점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부록 표 7〉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보육교사교육기관관리 및 지도점검	긴급상황발생 어린이집 대응(코로나 등) 총괄	어린이집 지도·점검	광역 기정양육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감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법인 단체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 총괄	어린이집 지도점검, 평가	어린이집 지도점검(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 업무
다문화통합어린이집지정및지원	어린이집 정기·수시(기회) 점검 업무 지원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급식, 위생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현장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례집 및 매뉴얼 발간 관련 업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어린이집 지도 감독
어린이집 코로나19대응지침관리총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안전장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어린이집 시설물 안전 관련 업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운영
안전보육 3대분야점검및 제도개선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건강·보건·방역·영양·급식·안전 업무	어린이집 CCTV, 통학차량 관련 업무					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분야 지도점검
어린이집원장및 점검공무원교육	어린이집 현장 확인 및 집중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CCTV 관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어린이집관리시스템운영및개선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 포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관리 관련 지원	어린이집 이동학대 예방					
보건복지부어린이집점검관련 총괄	지원 구군 지도점검 체계 확립 및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대응 감염예방등 어린이집 관리					
기타타지역에속 하지않은업무및 점검지원등	부모 모니터링 운영 및 플리스크ل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련 대책 및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증진사업(감 염병,급식,위생 등)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리 총괄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추진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및 하차확인장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어린이집점검관 련민원(이집민원 '보육신문고등') 총괄	어린이집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미세먼지, 석면, 실내공기질 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어린이집통학버스관리	어린이집 건강, 영양, 위생, 급식(보존식 기자재 지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리 총괄(점검결과 관리 및 보고자료 작성, CCTV, 급식·질병관리 등)	우수 어린이집 선정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 집중 대재해처벌법 관련업무								
어린이집 지도점검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검토								
어린이집안전관리전문요원운영								
어린이집 부정수급환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어린이집공익신 고포상금에관한 사항								
어린이집설내공 기질관리,공기청 정기지원								
미세먼지비상저 감조치대응								
영유아성행동관 련업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이용불편 등 민원관리	부모 모니터링단	어린이집 환경개선(도 자체사업)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법인 지도감독	어린이집 지도, 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감사, 행정처분 업무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급식위생관리, 재난관리		부모모니터링단 지원 사업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건강진단, 건강주치의, 방역)			어린이집 사건사고(아동학대 등)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방역물품 지원사업	급식·위생관리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음용수 등)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 재무회계 온라인 지도점검			어린이집 안전관리·통학차량	아동학대 관원(cctv 운영관리 등)			어린이집 위생 급식 안전 관리(운전자 교육)
			민원처리 등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평가제 관리

〈부록 표 8〉 보육정책위원회 및 교육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국공립확충심의 위원회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의회 등 주요업무보고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영유아 보육정책 홍보, 보육정책 홈페이지 관리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관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육정책위원회 등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전라북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보육정책위원회 운영(보육로 수업현장에 결정 등) 및 관리

부록 2. 17개 시·도별 영유아 및 유아교육·보육 업무 조직 현황

구분	유형	기관 수	재원 아동 수	0~5세 영유아 수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서울	유치원	788	66,524	39,236	43,090	43,881	46,197	49,612	53,032	275,048	24	33	57
	어린이집	4,712	167,427							30	338		368
부산	유치원	394	36,308	13,281	14,895	15,304	16,896	18,790	21,007	100,173	7	20	27
	어린이집	1,547	55,850							15	93		108
대구	유치원	329	32,272	9,585	11,021	11,433	13,151	14,410	16,179	75,779	14	4	18
	어린이집	1,139	42,487							8	46		54
인천	유치원	396	35,427	14,289	15,839	16,505	17,929	19,879	20,882	105,323	8	9	17
	어린이집	1,697	62,200							16	109		125
광주	유치원	288	20,998	6,862	7,952	8,051	8,813	9,591	10,658	51,927	14	-	14
	어린이집	940	31,732							8	34		42
대전	유치원	255	20,405	7,553	7,863	7,925	8,383	9,249	10,044	51,017	7	16	23
	어린이집	1,013	28,144							9	36		45
울산	유치원	191	14,779	5,104	5,903	6,257	6,999	7,646	8,513	40,422	16	-	16
	어린이집	656	24,892							5	34		39
세종	유치원	64	6,422	2,951	3,473	3,664	3,918	4,511	4,840	23,357	6	-	6
	어린이집	327	14,927							9	-		9
경기	유치원	2,175	153,149	71,714	78,736	82,452	88,387	96,618	104,175	522,082	23	58	81
	어린이집	9,438	331,516							23	449		472
강원	유치원	359	13,168	7,114	7,523	7,962	8,547	8,766	9,507	49,419	6	17	23
	어린이집	906	32,680							4	63		67
충북	유치원	324	14,993	7,266	8,146	8,547	8,896	10,290	11,166	54,311	7	11	18
	어린이집	972	38,884							4	58		62

구분	유형	기관 수	재원 아동 수	0~5세 영유아 수							사·도교육청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합계	사·도청 보육 업무 담당인력	시·군·구청 보육 업무 담당인력	사·도 및 시·군·구 보육 업무 담당인력 계
충남	유치원	498	23,647	9,685	11,008	11,861	12,991	14,057	15,377	74,979	10	21	31
	어린이집	1,516	52,196								5	59	64
전북	유치원	501	18,740	6,757	7,430	8,133	8,880	9,818	11,058	52,076	7	27	34
	어린이집	1,024	34,789								6	59	65
전남	유치원	516	16,285	7,664	8,334	8,969	9,899	10,492	11,420	56,778	11	12	23
	어린이집	999	38,927								4	61	65
경북	유치원	682	31,365	10,753	11,715	12,389	13,648	15,216	16,363	80,084	11	11	22
	어린이집	1,463	48,988								5	78	83
경남	유치원	683	42,385	13,245	14,961	16,350	18,269	20,664	23,176	106,665	17	11	28
	어린이집	2,123	68,841								6	122	128
제주	유치원	119	5,945	3,342	3,749	4,093	4,565	5,133	5,560	26,442	6	5	11
	어린이집	451	20,970								3	17	20
전국	유치원	8,562	552,812	236,401	261,638	273,776	296,368	324,742	352,957	1,745,882	194	255	449
	어린이집	30,923	1,095,450								160	1,644	2,714

주: 1)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022년 12월 기준이며, 영유아 수는 2023년 4월 기준임.

2) 유아교육 업무 담당인력은 2022년 9월 기준이며, 보육업무 담당인력은 2023년 4월 기준임.

자료: 1) 어린이집에 대한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12\(2023. 5. 16. 인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12(2023. 5. 16. 인출).).

2) 유치원에 대한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conn_path=13\(2023. 5. 16. 인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conn_path=13(2023. 5. 16. 인출).).

3) 0~5세 영유아 수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lumin.mois.go.kr/\(2023. 5. 16. 인출\)](https://lumin.mois.go.kr/(2023. 5. 16. 인출).).

4) 유아교육 담당인력은 문무경 외(2022: 53~61, 163~165)를 참고하였으며, 보육 담당인력은 각 시도청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인출하여 연구진이 작성하였음.

부록 3.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관련 세부 업무 영역 정리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유아교육과 주요 업무 기획 및 평가, 유아교육계획 기획·제작·보급,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 유치원 장학계획 수립 및 추진, 유아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운영,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계획 수립,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제작·보급, 유치원 에듀케어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도 및 점검, 유아 사교육 경감 관련 업무,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 업무,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운영 기본계획 수립,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관련 정책 및 운영 개선
사업 및 운영지원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평가, 부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유치원 평가 지원 유아교육 실태조사 연구 용역 사업 운영 공립유치원 개원 지원, 의무교육, 유아학교 명칭 개정 추진 관련, 현안 중심 컨설팅 운영, 유치원 수업지원 사업,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내실화) 지원, 개정 교육과정 안착지원(교육부사업), 연구학교(유치원) 운영(자체 및 교육부), 미래교육지원단 운영 관련 업무, 교육과정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공약사항, 유아 도덕·인성교육, 유치원 다문화 이해, 초등학교와의 연계 교육, 교육과정 중심 지역 네트워크 운영, 유치원 학사 운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관련 현황,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유치원 생활기록부 관리, 유아 관찰·평가 업무 지원, 맞춤형컨설팅 장학 운영, 수업 나눔 중심 컨설팅 운영, 생태전환교육 중점유치원 운영, 교육과정 연수 및 위탁연수 운영 생태·환경 교육, 유치원 독서교육 지원, 유치원 문화·예술·체육 교육, 유아 역사·평화 교육, 교육과정 관련 자료 개발 보급, 교육공무직 업무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인력풀 운영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불편신고센터 운영, 현장체험학습 지원 업무, 유아교육 홍보 업무, 유치원 학부모회 업무, 방과후 놀이 쉼터 업무, 미래형 학부모 온·오프라인 놀이교실 업무, 유·보 이음교육 운영 업무, 더불어키움유치원 선정·운영, 더불어키움(유치원지원위원회) 운영,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 수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업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지도·점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연수,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사업 예정산

유치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수립, 유치원 교육공무원 인사 모니터링,
 유아 교육전문직원 정·현원 관리, 유아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공립유치원 원장, 원감 및 교육전문직 임용,
 관급 전문직 평가, 공립유치원 원장 중임(임용) 심사 운영,
 유치원 교육공무원 징계 및 직권면직, 직위해제, 고충처리, 공립유치원 원로교사제
 교육부 교류(관급), 공립유치원 교원 및 전문직 평정, 공립유치원 교원 정·현원 관리,
 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선발 인원 계획, 공립유치원 원장 공모제, 공립유치원 교사 전보,
 본청소속 공립특수학교 특수학교교사(유치원) 전보, 공립유치원 초빙교사 운영,
 유치원 교육공무원 인사참고자료 작성, 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임용 및 선발 업무 지원,
 공립유치원 장애인 교사 관련 업무, 공립유치원 수석교사 선발 및 평가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지원 및 면접,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지원
 유치원 직무연수 관련 업무, 유치원 교원 국외연수 및 공무원외여행 심사·허가,
 공립유치원 교원 국내·외 파견, 공립유치원 교원 시·도간 교류,
 공립유치원 교원 국공립 교류, 공립유치원 교원 호봉, 유아 교육전문직원 정기승급 관리,
 유치원 교육공무원 복무·겸직, 유치원 교육공무원 퇴직·휴직·복직, 유치원 성과상여금,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 유치원 교육공무원 NEIS 관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치원 서울학습연구년, 학교(유치원) 교육력 제고,
 교권보호 관련 업무, 유치원 교원 상훈 및 포상
 교육전문직원 자비부담연수비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직원 연수 관련 업무,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 인력 운영 및 지원, 성인지 사업 관련 업무,
 장학자료 개발, 유치원 교구 기준 조정 관리,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편람 제작,
 사립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지침 수립 및 관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용 실태 점검 및 관리,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계획 및 운영,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급) 무상교육비 지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 개선(학급운영비)
 사립유치원 카드수수료 지원

거버넌스 및 시스템

전문직 학습공동체 운영, 유치원 관리자(원장, 원감) 회의,
 유아교육전문직 워크숍 기획·추진, 유아교육 단체(공립) 관련,
 교직단체업무, 사립유치원 단체 관련 업무, 유·보 통합 관련 업무,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모 행복교실 운영 지원, 유치원 학부모 관련 업무,
 시스템 권한관리 및 사용자등록(인증서 포함)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연수,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별 협의체 운영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TF(교육부) 요구자료 관리,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테스트 및 자체 검사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및 결산 관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접속방법 개선,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환경분야 지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용 실태 점검 및 관리,
 사립유치원OECD교육재정조사 자료 작성,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인프라 관련 타부서·유관기관 협의,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초기 데이터 구축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연수,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전문상담(컨설팅) 추진,
 사립유치원 전문상담지원단 구성 및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연수교재 제작,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용 실태 점검 및 관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 분야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초기 데이터 구축,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응용SW 분석/설계 협의·확정 지원,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타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유치원 환경(공간) 관련 업무, 유치원 생활지도, 유치원 안전교육 관련 업무, 유치원 안전관리 업무(성범죄, 아동학대 등), 유치원 유아 건강교육 관련 업무, 유아 성교육 내실화 방안 관련 업무,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 안심환경 조성 지원 업무, 에듀케어 안전지원, 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관련 업무, 교직원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조회,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평가·컨설팅 운영

지원 조직
유아교육진흥원 업무 관련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지방 단위 업무 분석